2007. 2



I. 개 요 ··································	······ 1
1. 추진배경	
2. 외국인의 범주 및 지위·······	
2-1. 외국인의 개념	
2-2.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주	
2-3. 거주외국인과 주민의 관계	_
3. 외국인의 권리·의무···································	
3-1. 기본적 권리·의무	_
3-2. 헌법·국제법상 권리·의무	
3-3. 지방자치 관계법상 권리·의무	9
4. 정부의 외국인 지원제도 및 한계	11
4-1. 외국인 지원 기구·제도	11
4-2.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	18
Ⅱ. 거주외국인 현황 및 생활실태	19
1. 현 황	21
1-1. 체류외국인 수	21
1-2. 대상별 현황	22
1-3. 거주외국인 현황	26
2. 실태 및 문제점	29
2-1. 거주외국인 생활·지원 실태 ·····	29
2-2. 대상별 실태 및 문제점	30
Ⅲ. 지자체 업무추진 체계 구축	35
1. 추진방향	37
2. 추진체계	38
3. 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제	39
3-1.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39
3-2.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40
3-3.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41
3-4. 지역단위 (가칭)「국제센터」 설치·운영 지원	44
3-5.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	46

Ⅳ. 정착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 47
1. 프로그램 운영 원칙과 방향	
1-1. 프로그램 운영 원칙	
1-2.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방향	
2.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1. 한국어 및 기초 생활적응 교육	
2-2.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2-3. 민원·생활·법률 상담	
2-3. 인권·영宣·법률 영담 2-4. 행정정보 제공 및 생활편의 지원	
2-5. 응급 구호 및 긴급 복지 지원	
2-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V.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참고사례	. Q1
1. 국내 지자체 사례····································	
1. 국내 시자세 사데	
1-2. 한국어 및 기초생활, 기술교육 분야	
1-3. 상담 및 정보제공 분야	
1-4. 생활편의·복지 지원 분야	
1-5. 응급 구호 및 의료지원 분야	
1-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2. 외국 사례	
2-1. 일본의 지역 「多文化共生」 시책	
2-2.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2	
2 3. 목글의 이구되작한 시외등합 성색	171
Ⅵ. 참고자료 ····································	175
1. '06년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세부지침	177
2.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182
3. 중앙부처 외국인 업무 현황	188
4. 각 국의 외국인 업무 현황	191
5. 외국인 권리·의무 등 관계법령(발췌)······	194
6.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7
7.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현황	211
8.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현황	

Σ [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	원 업무편람		I

1. 추진 배경

최근 증가하는 국내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의 중요성 부각

- 국내거주외국인은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산업 노동력의 대안이며, 인권보장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류 지속화 효과도 기대
-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자국민 보호, 독일 프랑스 소요 사태와 같은 장기적인 사회문제화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

거주외국인 지원문제는 출·입국이나 체류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 문제로 귀착

- '03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이 문제였으나 '05년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응 문제로 자연스럽게 중심이 이동
- 이는 외국인의 적정유입, 수용 억제 차원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응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
- □ 지역사회 정착지원시책은 지자체가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
 -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므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
- ⇒ 외국인 정착지원 업무는 미래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이며 잘하면 국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잘못하면 국가의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필요성

-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
 - 외국인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국내에 수용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
- 그러나,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큼
 - 거주외국인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생활인 주민이므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 거주외국인도 「주민」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만 아니라, 국제인권 규약이나 인종차별방지조약 등 국제법 조약과 부합하는 것이고
 -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관광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며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차세대 육성은 물론 지방의 국제화 수준 제고에도 기여

2. 외국인의 범주 및 지위

2-1. 외국인의 개념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를 포함
-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국적보유 여하에 의하여 구분되며, 국민의 요건은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국적법상 출생 결혼 귀화 복적 인지 입양 등으로 국적 취득

*

- 2 1 : ' '

,

- 2 2 : ' '

이민과 국적

- 이민()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 사람으로 출입국의 구별에서 이출민과 이입민으로 분류
 - 이출민과 이입민 : 노동기구(ILO)주최 '국제이민회의'에서 규정이출민(emigration) :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등에게 동반 또는 합류하는 자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 이입민(immigration) :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암시한 외국인 노동자
- 이민과 국적 : 이민은 통상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영주권자 로서의 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준수 후 국적(시민권)의 취득자격 부여

2-2.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주

-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해외 입양아 등 ※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국제결혼이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확대 적용

2-3. 거주외국인과 주민의 관계

Ⅱ 거주외국인 및 주민

- 거주외국인
 - 지자체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2)

***** 90

- 주 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지방자치법 §12)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6)

② 거주외국인이 주민 에 해당 하는지

- 국적 관련법에서 외국인등록지를 주소로 상정
 -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을 것'을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규정(국적법 §5)
 -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규정(출입국관리법 §88조의2)
- 외국인 체류지는 생활의 근거로 민법상 주소에도 해당
 - 90일이상 체류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체류(거주)하는 곳을 생활의 근거로 볼 수 있으며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봄.(민법 §18, §19)
- 주민등록법 해석상, 외국인도 주민이나 등록대상에서 제외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단서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 ▶ 외국인은 체류지(등록지)를 주소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 ▶ 지자체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음.

3. 외국인의 권리 의무

3-1. 기본적 권리·의무

-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는 인정**된다고 보며, 외국과 상호주의 차원으로 개별법에서 권리·의무 부여
- 일반적으로 체류국 국내법에 복종하여야 하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공동체 보존(전염병, 화재 등에 대체) 의무를 가짐

3-2. 헌법 국제법상 권리 의무

□ 헌법상의 권리

- 헌 법(§6)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 헌법재판소('94.12.29, '01.11.29 결정)
 -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임.

○ 학 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입장

□ 국제법

- 세계인권선언(제2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3-3. 지방자치 관계법상 권리·의무

Ⅱ 지방자치법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소속 지자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짐(법 §13, §14)
- 법 제13조의3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19세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주민 총수를 '주민등록표에 의한 조샤'로 규정하여 외국인은 제외
- 법 제13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와 법 제13조의5에 의한 「주민소송」은 현재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권자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만 규정하여 거주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②「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및「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할 수 있므로 거주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③ 지방세법

- 거주외국인도 **주민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
 - 법 제173조(납세의무자)에 규정된 '시 군내 주소를 둔 개인'에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를 둔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05년 행자부 세정과)

% 1- 2- 3()

31

.('98.2.25)

4. 정부의 외국인 지원제도 및 한계

4-1. 외국인 지원 기구 제도

① 총괄 조정

- □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 설치근거 :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
 - ***** 171 ('06. 5. 22)
 - 구 성 : 총 25명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7)

재경 교육 외교 법무 행자 문화 농림 산자 복지 노동 여성가족 건설 해수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중소기업청장

- 민간위원(7)

설동훈·윤인진(학계), 박연철(법조계), 정현백·김민정(여성단체), 배기철(시민단체), 이다도시(방송인)

- 주요기능
 -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
 -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 방안 심의 조정
 -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협조사항 조정
 - 외국인정책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 ** '06. 12

법안 주요내용

-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6)
-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10)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기타 지원조치 가능(§11)
 - 영주권자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13, §17)
 - 전문기능 외국인력 의 유치 촉진 시책 마련(§16)
-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매년 5월 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19) 등

② 대상별 지원 기구 제도

- □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노동부가 3년간 고용허가

- 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하면서 적정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활용
- ②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보험) 가입
- ③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을 보장
- ④ 국가간 MOU를 체결하고 정부(공공기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송출·도 입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송출비리를 최소화

*	(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제도 비교

구 분	고용허가제도	산업연수제도
제도취지	인력난 해소	인력난 해소
규율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도입절차	노동부가 고용허가 /법무부가 입국 체류·허가	중기협이 연수업체 선정 /법무부가 입국 체류·허가
근로자 자격	취업 3년	연수 1년+취업 2년
인력모집 선발	국내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공적기구가 제시하는 대상자 중에서 사업주가 최종 선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등)가 송출기관이 모집·선발한 인력을 배정
인력배정 시스템	사업주가 근로자 직접선정 및 자율적 근로계약 체결	강제배정 시스템
사후관리	노 동 부	중기협·위탁관리회사 (중기협지정법인)
외국사례	대만, 싱가폴, 독일 등	일본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
(:)
○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
○ 고용허가제 운영 체제 - 노 동 부 : 외국인력제도 운영, 송출국가와 MOU 체결 등
- 도 중 구 : 되독인역세도 문항, 공물국/F와 MOU 세절 등 - 대행기관 : 송출국가와 접촉, 외국인력 도입 대행,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 담당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자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도입규모 및 인력송출 양해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선정 □ 각서 체결 □ 명부 작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부↔송출국가) (송출국가↔정부)
고용하가 신청 및 고용하가서 발급 다 (1) 이 시 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사용자→노동부) (사용자→노동부) (사용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재오	동포
--	------	----	----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
-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٠
T. Control of the con		
·		٠
·		•
·		•
I and the second of the second		٠
·		•
· ·		•
1		۰
•		•
·		۰
1		•
<u>.</u>	_	•
:	,	:
1		:
:		:
:		:
•		:
i e		i
, !		i
		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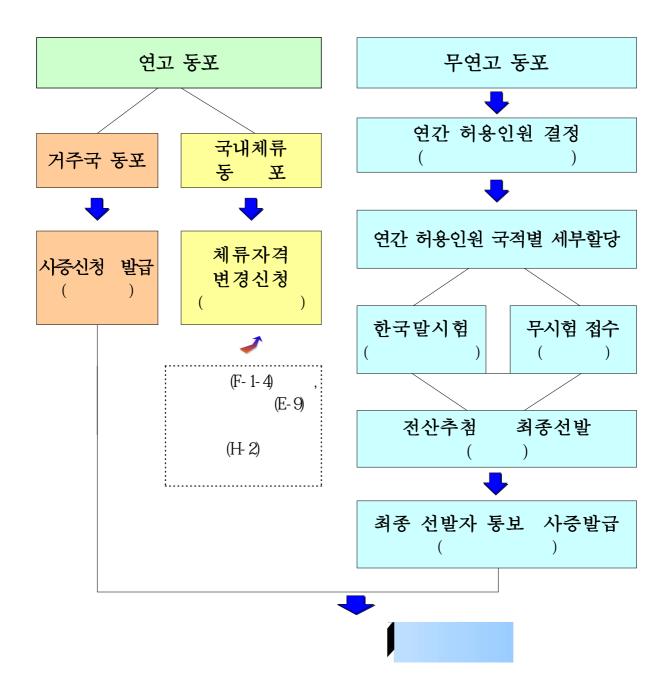
※

- 외국인근로자 특례취업제도(방문취업제)
 - 방문취업제도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 포용정책

***** (*07.1)

-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 국내 친족 호적이 있는 동포는 연간 허용인원 제한없이 사증을 발급하나, 무연고 동포는 대량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연간 허용인원을 설정하여 입국 허용

방문취업제 흐름도 (: 2007. 3. 4)



□ 여성결혼이민자

- 복지지원
 - '05.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의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 (한시 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에도 포함
 - 건강보험 가입 안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 '06년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21개소)하여 한국어 교육, 상담서비스 등 제공
 - 외국인 여성 전용 쉼터 설치(인천, 천안)
 -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제작 배포
-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복지부)

법안 주요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록자격 명시
-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사업 등과의 겸업 금지, 허위과 장광고 금지,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정보의 사전 제공 및 확인 의무 부여
- 시 도지사의 중개업체에 대한 시정 변경 명령, 등록 취소, 폐쇄 조치

4-2.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

- □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것은 법 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과 실천이 더욱 중요
 -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의 거주 및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곤란**
 -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은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 생활정보 제공, 상담 등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
- □ 중앙부처별 법 제도적 접근방식으로는 포괄적 지원이 미흡
 - 중앙부처별 또는 입법목적별로 접근방식에 차이
 - 부처별로 지원대상 및 정책 수행방식이 다르고 연계성이 부족 ※ - , - , - , - ,
 - 외국인 관련 개별법률별로 입법정책적 목적이 다름 ※ 240
 - 해외입양아, 혼혈인, 무국적자, 체류기간 도과자 등의 보호·지원 문제는 주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고려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
- ⇒ 중앙부처는 개별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의무 등을 통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활인으로서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역할에는 근본적으로 한계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업무편람		I

1. 현 황

1-1. 체류외국인 수

- 2005년 **출입국자 수가** 3,263만명으로 1995년 1,601만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하고, 2010년에는 5천만명으로 증가 예상
- 2005년 말 체류외국인 수가 74만명으로 1995년 19만명에 비해 약 290% 증가하고, 2010년에는 100만명 체류예상

※ 체류 외국인 현황('05.12, 법무부)

(단위: 명)

구	분	체류 인원		주요 국가별	체류 인원	
체류외	미구이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세ㅠ+ (합법 +	1 수 건 + 불법)	747, 467	282,030	103,029	39,410	38,902
	•		(37.7%) 합법체류 외국	(13.7%) 20 1	(5.2%)	(5.2%)
		체류 인원	<u> </u>	<u>기년</u> 미국	카나다	호주
의국국	전 동교				1	·
-1-1-1	7 0 -	146,614	122,026 (83.2%)	17,788 (12.1%)	3,553 (2.4%)	1,563 (1%)
			미국	카나다	일본	영국
	전문인력	19,951	5,022	4,999	1,225	1,163
외국인			(25.2%)	(25.2%)	(6.1%) スコ	(5.8%)
- - - 근로자	예 체능	3,371	필리핀	러시아 279	중국 280	우크라이나 163
근포시 (167,022명)	인력	0,071	2.192 (65%)	(8.3%)	(8.3%)	(4.8%)
(107,0223)	_「 」し、フリ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단순기능 이력	143,700	43,330	19,210	17,917	15,319
			(30.1%)	(13.4%)	(12.5%)	(10.7%)
결혼0	l민자	70.004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국적취득		70,381	42,330	7,654	7,218	3,683
((60.1%) 방글라데시	(10.9%) 미얀마	(10.2%) 에디오피아	(5.2%) 카메룬
난민 (인정자	41	12	9	5	4
			(29.3%)	(22%)	(12.2%)	(9.8%)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의국인	유학생	19,430	13,211	923	932	854
			(68%)	(4.7%)	(4.8%)	(4.4%)
이그이	ニ エレエレ	6,709	일본	중국	파키스탄	미국
외국인투자자		6,709	1,684 (25.1%)	1,321 (19.7%)	544 (8.1%)	474 (7.1%)
			불법체류 외국		()	
		180,792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불법체류	루외국인	(100%)	79,377	13,605	13,249	11,146
		(10070)	(43.9%)	(7.5%)	(7.3%)	(6.25)

1-2. 대상별 현황

Ⅱ 외국인근로자

- 세계 최저의 출산율('06년 현재 1.19명)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 고 학력화, 국민정서 변화로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	'05.12			167	,
	UNESCO	2050	2		

○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제고 세수확대 등을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반면,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적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 증가를 우려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구

※

WTO

(DDA) FTA

('05.8))

	합 법 체 류 자						
전 체	211	취업시	·증 소지 급	근로자	사 업	해외 투자	불 법 체류자
(: ,%)	소 계				산 업 연수생	기업연수	2411124
332,653 (100.0)	142,919 (43.0)	31,352 (9.4)	22,718 (6.8)	48,994 (14.7)	33,185 (9.9)	6,680 (2.0)	189,724 (57.0)

※

(15

61) (21,638)

② 결혼이민자

- 1990 2005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06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이며, 그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2.3%를 차지
- 특히 2005년 농촌지역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으로 약 10건 중 4건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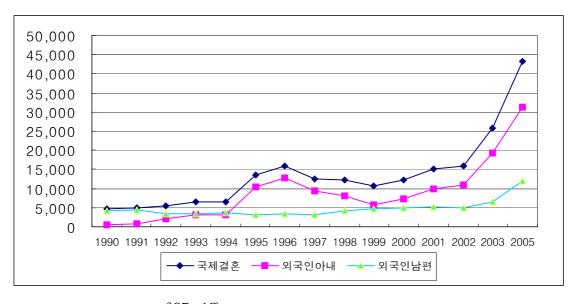
*: 11.2%(01) \rightarrow 11.9%(02) \rightarrow 21.1%(03) \rightarrow 35.9%(05)

<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

	총 결혼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연도	건수	건수	0/0	건수	0/0	건수	0/0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 , '05.12

< 국제결혼 추이 >



('05. 12)

혼혈인

○ 현재 =	국내에만	35천명	정도의	혼혈인이	있을 것	<u> </u> 으로 =	추정될	뱐
혼혈인	수에 대	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는 >	전무한	실정	
*	5	,	() 3	(2000	3)	
○ 이주날	도동자긴	· 국내출	생 자	녀는 신분	보노출을	우려,	대부	분
미신고	1, 숫자3	파악 곤형	란					
% '05		15		(6,471)				
					2500		()
○ 주한미	군 관련	혼혈인?	1 2세디	내는 '82.8 월	! 미국의	이민특	례법으	.로
대부분	브 이민,	현재 국	내거주	혼혈인 4	수는 400	500≎	려명(200	J3,
인권위	자료)							
*	(1), 60	70	(2), 80		(3)		
이 베트님	남전쟁 관	ナ런 한국	유인 2 세	혼혈인는	- 정확한	<u></u> 통계는	- 없으	나
'06.3	현지공관	보고는3,	.000명 -	수준 추정				
O 베트남	; 필리핀	. 인도, 중	국 등	한국기업 7	진출이 많	낡은 동남	l 아권어	 人
한국인	<u>]</u> 현지 2	2세 혼혈	인이 3	주로 발생,	이들의	숫자니	- 실태	에

대한 기초적 자료도 없는 실정

4 불법체류자

- '06.8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8만5천여 명으로서, **불법체류율**은 '02년 46%를 정점으로'06.8월말 현재 21.3%로 점차 감소 추세
 - 국적별로는 중국이 75천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의 순임
- 체류자격별로는 사증면제 등 단기사증이 74천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

*

93% 46,831 '03

'048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총체류외국인	351,084	386,972	308,339	381,116	491,324	566,835	629,006	678,687	750,873	747,467	875,233
불법체류자	129,018	148,048	99,537	135,338	188,995	255,206	289,239	138,056	188,483	180,792	185,994
불법체류율	36.8%	38.3%	32.3%	35.5%	38.5%	45.0%	46.0%	20.3%	25.1%	24.2%	21.3%

국적별 현황

('06.8월말 현재/단위 : 명)

그ㅂ	합계	중 국		피키피	베트남	방글라	태국	기타
下世	합계	동포	한족	필리핀	메드급	데 시	니카	/ 기년
불체자	185,994	31,154	43,905	14,199	12,866	12,713	11,757	59,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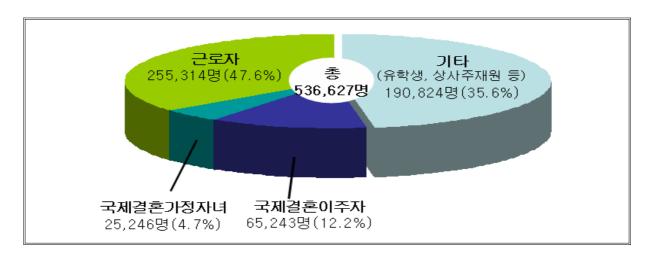
체류자격별 현황

('06.8월말 현재/단위 : 명)

총 불법체류자	사증면제 (B-1)	단기상용 (C-2)	단기종합 (C-3)	산업연수 (D-3)	연수취업 (E-8)	비전문 취업(E-9)	기타
185,994	22,933	18,289	33,074	23,144	16,270	50,335	21,949
구성비	12.3%	9.8%	17.8%	12.4			

1-3. 거주외국인 현황('06.4, 행자부 실태조사)

[] 총 괄



- □ 90일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536,627명으로 인구의 1.1%
 - 이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345,803명으로 전체외국인의 64.4%
 - 나머지 35.6%는 유학생·상사주재원·외교관 등임
 - O 성별로는 남성이 57%, 여성이 43%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67%가 남성
 -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4.9%
 - 전체외국인 중 **7.4**%인 **39,525명**이 귀화·출생·인지·결혼·입양 등을 통해 **국적** 취득
- □ 집중 지원대상인 외국인(345,803명) 유형별 현황
 - 외국인근로자는 255,314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7.6%
 - 국제결혼이주자 및 국제결혼가정자녀는 90,489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6.9%

② 국적별

□ 전체 외국인

- **중국**국적이 247,440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6.1**%
 - 동남아 23.0%, 남부아 6.3%, 미국 4.8%, 대만 4.0%, 일본 3.6%, 몽골 2.8%, 중앙아 2.4%, 러시아 0.7% 순임.
- 중국국적자(247,440명) 중 **조선족**은 169,995명으로 전체외국인 대비 **31.7**%

□ 외국인근로자(255,314명)

- 동남아 29.8%, 조선족 28.7%, 중국 14.2%, 남부아 8.1%, 몽골 4.0% 순
- 성별로는 남성이 다슈(67%)를 점하고 있으나**조선족**의 경우는 여성이 51.1%

□ 국제결혼이주자(65,243명)

- 조선족 42.1%, 중국 20.7%, 동남아 18.3%, 일본 8.3%, 남부아 1.4% 순
- 국제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전체 84.9%, 동남아는 **94**%)
- □ 전체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39,525명)의 경우
 - 조선족 55%, 중국 24.7%, 동남아 10.6%, 일본 2.3%, 대만 2.1% 순

③ 지역별

□ 전체 외국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5.6%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31.5%)
 ※ 31.5%(169,081), 27.8%, 63%, 53%, 46%

□ 유형별 거주지역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기 47.6%(121,518명), 서울 15.7%, 인천 7.0%, 경남 6.3% 순으로 수도권에 70.3%가 집중거주
- 국제결혼이주자는 경기 27.2%(17,757명), 서울 22.9%, 인천 9.2% 등 수도권에 59.3%가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

□ 시·군·구 거주분포

- 시·군·구 평균 거주외국인은 2,293명이며
 - 이중 외국인근로자 1,091명, 국제결혼이주자 279명, 국제결혼 가정자녀 108명임.
- O 거주외국인의 규모별 거주현황

거주외국인수	계	100백명 이상	100 50백명	50 10백명	10 5백명	5 1백명	1백명 미만
시·군·구수	234	8	25	88	46	61	6

2. 실태 및 문제점

2-1. 거주외국인 생활 지원 실태

- □ 단일민족이라는 뿌리깊은 순혈주의에 기반한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내국인과의 갈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
- □ 대부분의 거주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
 -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불안정, 임금체불, 의료, 산업재해, 자녀양육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 국제결혼이주자도 가족간의 갈등,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학교 부적응 문제 등 제기
- □ 이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흡한 실정
 -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지수혜 조차 불가능
 - 지자체 및 민간기구의 적응프로그램 지원은 시범사업 수준

2-2. 대상별 실태 및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90% 이상이 3D 업종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근무환경 열악

% '05
()

- 입국전 한국어 연수를 받는 기간이 짧음에 따라 직장내 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재
 - 작업장 안전수칙, 의사전달 장애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빈번
- 산업재해 발생시 보험금의 인상이나 산재다발 사업장으로지정 되는 것을 염려한 고용주의 산재신청 기피로 인권문제 발생
- 근로자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평균 3,9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입국비용 과다로 불법체류자 양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와 생활정보 제공 의료서비스 등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미흡

**
(, '05.6)

- : (36.2%), (23.5%),
(17.5%), (7.7%), (7.4%)

- : (27.9%), (16.4%), (16.4%),
(9.1%), (2.9%)

2 결혼이민자

\bigcirc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꼬	파 타 되	는 사례 발	·생				

\bigcirc	여성?	결혼이	민자 자녀들	은 투	- 모의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 가정	학교	교육에서	문제

** 17.6% - (34.1%), (20.7%) (, 2005)

○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13.7%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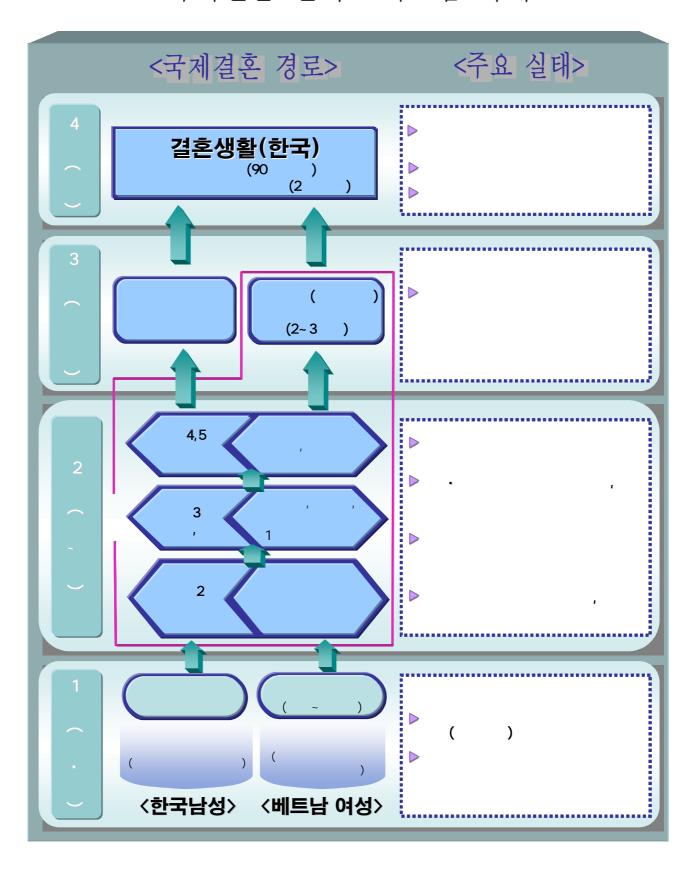
52.9%, 1857.5%,15.5%(, 2005)

○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

***** 25%, 13% (, 2005)

-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 호적인 환경 등 때문에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 발생
-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의 복지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오해

<국제결혼 실태 : 베트남 사례>



③ 혼혈인

- 주한미군 혼혈인 대부분은 출생시 부터 전생애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최하층으로 전락
 - 학교 교육에서부터 2/3 이상이 놀림(73.3%)과 따돌림(64.4%), 불합리한 대우(61%)를 경험, 42.2%가 중간에 학교를 포기 ※ , 2008 (45)
 -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 정도로 2003년 서울시민 월평균 가구소득 281만원의 36%에 불과(출처 : 인권위자료)
 - 반복적 누적적 차별 경험으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 결과 42.2%가 자살시도를 경험(출처 : 인권위 자료)
- 본래적 의미의 혼혈인은 아니나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도 혼혈인과 동일한 차별문제에 직면
 - '05년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학적령기(만15세 이하) 자녀는 2,500여명으로 추정되나 재학생은148명(5.9%)에 불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정규교육권 밖에 방치
 - * '031.19 'UN
 - 여성인 경우 성희롱성폭행 등 인권침해와 임산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 증가
 -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12%가 강간을 경험, 비한국계 불법체류 외국인여성근로자의 87%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2002, 인권위)
 -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출생 후 1개월도 안된 영아를 본국으로 위장출국 시키는 사례 증가

4 불법체류자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내의 일부 사업주들에 의한 노동력 착취의 주요 대상이 됨
- 권익 등을 침해받은 불법체류외국인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공공기관의 구제제도 이용곤란 등 실질적인 권익보호 미흡

(03 2,866 → '04 9,690 →(05 15,839

- 불법체류외국인이 단속 등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되는 경우 국내에 동거중인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국내출생 외국인자녀에 대한 영주권 또는 국적 부여를 주장
-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閨 체류자로 전락
 -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2

○ 우리나라 학부모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 자녀의 교육 및 의료혜택 제한

* : 1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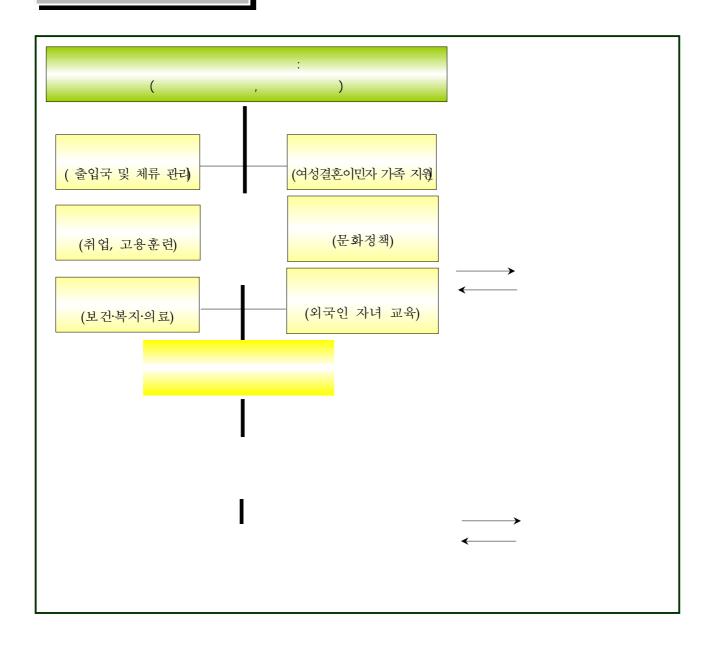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림	
	$\Box\Box$

1. 추진 방향

※

- □ 자체 실정에 맞게 거주외국인 지원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한 거주외국인 지원근거 마련
 -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
 -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 9,412 , 321
-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제고, 인식전환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 평가
 - 담당공무원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홍보 강화
- □ 추진 주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
 - 중앙정부에서 거주외국인 시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 제시
 - 지자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2. 추진 체계



3. 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제

3-1.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외국인 지원시책의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 설치근거 :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

- □ 구 성 : 총 10인 이내(표준 조례안 제7조)
 - 위원장 : 부시장(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임기 2년)
 - 당연직위원 :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 □ 기 **능**(표준 조례안 제8조)
 -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존종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 운 영
 - 회의소집 : 자치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 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3-2.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거주외국인에 대한 복지증진, 권익보호, 생활안정 등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

□ 추진방안

- 시 도 및 시 군 구 전담기구 인력 확보, 읍면동별 외국인 민원 등 담당자 지정
 - 가급적 총무 자치행정 등 총괄부서에서 전담인력을 두고 기관내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 거주외국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07

(321)

안산시 외국인복지지원과 설치 운영 사례

구 분	현 원	분 장 사 무
과 장	1명(5급)	■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관리담당	3명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추진외국인관리 업무, 외국인관련 시책추진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책 발굴 등
민원담당	2명	 외국인 민원, 이주노동자 가정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역공동체 형성업무, 부당해고 폭행 등 상담 일반민원, 생활민원처리, 공동쓰레기 홍보 및 교육
문화사업 담 당	3명	■ 중앙정부 지원사업, 외국대사관, 문화원 연계사업 추진 ■ 외국인 문화사업 시책 개발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형성 ■ 국경 없는 마을 특구조성, 다문화마을 건설
복지지원 담 당	3명	● 외국인 복지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 외국인지원관련 시책개발 및 추진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통역 및 상담

3-3.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시 도 및 시 군 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시행
-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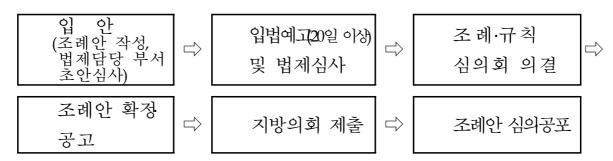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 미약
 -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고, 외국인 권리· 의무 등 법적지위 미 정립
- 외국인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관심 부족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헌법 제11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절차



□ 표준조례안 주요내용

O 총 칙(제1조 제6조)

-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제7조 제11조)

-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 활성화(제12조 제18조)

-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고
- 매년 5월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여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함.

표준조례안 관련 FAQ

- 외국인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음

* (

- 지원대상 거주외국인의 범위에 외국인이 아닌 자도 포함되는지?
 - 표준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자)에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 등이 포함하도록 규정
 -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므로 법상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외국인 관련단체 지원이 가능한가?
 - 표준조례안 제12조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 군 구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포함시켜도 무방

3-4. 지역단위 (가칭) 「국제센터」 설치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내 모든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안내공간 필요

□ 설치 근거 : 별도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 기본 방향

- 내 외국인이 지자체 생활정보와 외국의 정보를 상호교환
-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교육 시설로 활용

※

※ '

□ 국제센터의 주요기능

- 거주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민 관 협력을 통한 시민의 국제화의식 함양
- 법률 의료 노동 문제 등 상담을 통한 생활서비스 제공
- 국제교류 증진, 외국어 통 번역, 외국정보 제공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사 양성 외국인의 자국민 네트워크 구축 등

□ 설립 운	영 방법				
자치단치	세 직접 설립 은	은영			
*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자치단체	세 설립 후 민긴	위탁			
*	\rightarrow	\rightarrow	($)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	
비영리법	は인 설립 지원				
*	\rightarrow	\rightarrow	(,)

국제센터 설치 운영 사례

구 분	설치일	운영방법	주 요 업 무	조직구성
부산시 국제교 류재단	'05.11.25	법인설립 (지자체 출자)	국제회의 기획 국제교류 및 홍보 통 번역 공증대행서비스 제공 유학컨설팅(한국어 강좌 등) 국제정보센터 운영	2팀, 1센터 (11명)
인천시 국제교 류센터	'05.10.5	법인설립 (지자체 출자)	국제대회 유치 지원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 도시 지역간 교류 활성화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국제교류 정보 DB 구축	4팀 (14명)
대전시 국제교 류센터	′ 05. 7.1	위탁운영	시민의 국제화 감각 육성 및 인식 제고 국제간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 방안 구축 국제교류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정주외국인 및 방문외국인에게 편의 제공	3명 (자원 봉사자 10)

3-5.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

- 지자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성별 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주민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참여 유도

□ 주요내용

- 정기적으로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 실시 ※
- 읍면동 복지요원 보건지소 등을 활용, 생활실태 수시파악
-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간행물, 지역신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거주외국인에 대한 민간단체의 친밀성과 근접성을 감안 실태조사시 민간단체 활용 검토

***** '07

'06년 실태조사 사례

- 조사기간: '06. 4. 1 4. 30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적법 또는 불법 체류 불문) ※ 90 ()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포함)
- 조사내용
 -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수(유형별·성별·국적별·지역별)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지원 기구 단체 현황
 - 거주외국인의 주거 등 생활실태, 애로 건의 사항 등
- 조사방법 : 시·군·구별로 읍면동 단위 전수조사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	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	₽ □□□	IV

1. 프로그램 운영 원칙과 방향

1-1. 프로그램 운영 원칙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국적 체류기간 성별 등 외국인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거주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 문화적 다양성 수용

- 출신국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존중 타 종교 등 배려
-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수동적대응이 아닌,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자체가 지자체의 귀중한자원으로 인식

□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거주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
- 지역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등을 강구

─ 《 유의 사항 ≫ ─

- ▶ 외국인의 입장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전시성 일회성 동원성 행사
- ▶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 정책적 지원범위 설정
- ▶ 검증이 안되었거나 외국인 업무와 무관한 민간단체에 예산지원

1-2.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한국사회 정착 외국인

- 우리사회 적응 지향적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
 - 자녀 학습능력 개발, 경제능력 배양, 가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외국어 능력 등 외국인의 인적자원개발 활용 차원도 고려

□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입국 초기
 - 한글교육, 노동권 생활법률 등 기본적인 권리침해 예방에 중점
- 특성화된 귀환프로그램 제공(입국 후기)
 - 민간 NGO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기술교육, 소규모 비정규 과정의 직업교육과 연계
 - 귀국 후 한국 및 한류 홍보대사로 활용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불법체류 외국인

- 불법체류를 조장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
- 지자체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 자발적 귀환프로그램 마련
 -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귀환을 촉진
 - 귀환시 경제, 문화, 가족 관계 등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2.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1. 한국어 및 기초 생활적응 교육

- 언어, 생활문화 등 이질감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 도모
-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가족간 유대강화 및 기업체 생산성 향상

□ 운영 방향

- 한국사회라는 언어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문화적 총체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
 - 문화적 지식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한국어 수업 운영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병행 실시
-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시간(토 일요일), 장소(회사, 가정), 방법(인터넷 등) 등 고려
- 민간단체, 대학 등 교육기관을 활용, 수준별 교육

□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

≪준비 단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빠른 시일내에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지역 행정정보와 한국사회 관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기회 제공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수요 조사

- 한국어를 할 수 없어서 불편한 사항 () , ,
- 한국어 학습의 목적 () ,
- 교육 희망자 수, 교육 장소 시간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시행 단계≫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실 개설

-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 초 중 고급과정 / 1년 단위 /수준별 반 편성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내국인과 자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누도록 함으로써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부여
- 한국어교육과 병행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교육 실시 ※ , , ,

교사 선정

- 한글교육 연수과정 이수자 등을 적극 활용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 전공자 ※
- 전 현직 교사 및 한글전문교사 유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

교육 장소 :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가까이에 전담 교육기관 지정

- 교육장내 보육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마련
- 가정 경제적인 이유(양육 교통문제, 가족의 반대 등)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방문 강의방안 등 대책 강구 ※
-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의 경우 운영비 등 재정지원 교재 선정 : 국립국어원의 한글교재 활용 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실시
-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 결혼이주자 : 생활 한국어 중심 교육
 - 자녀 : 방과 후 특별 보충수업 실시
- 외국인근로자 : 수준별, 직장조건별 교육기회 제공
 - 작업장 용어, 생활 한국어 중심
 -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쓰기, 문법 중심교육
 - 귀환대비 : 비즈니스 한국어교육

*

≪교육 시행 단계≫

결과 평가

- 교육 결과에 대한 레벨테스트 및 강의방법 등 설문조사 실시
-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수료증 교부, 한글경연대회,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등

□ 참고 사례

찾아가는 한글교실(경기도)

- 경기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5개)의 사업장내 방문교육
 - 사내 교육원·식당 등 활용, 중국·태국·인도네시아 등 근로자 대상
 - 점심·저녁시간 등 사업장 근로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현장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기업부담 해소 외국인 한국어 강좌(부산시 국재교류재단)
-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수요조사초·중급으로 매주 상시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외국인 커뮤니티 결성 유도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경북 경주시)
-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음식 지역 문화·역사 및 직업교육을 병행

일본어 학습 리소스센터(나가노현)

- 다국적 주민 등의 일본어 및 생활지원에 관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리소스센터를 현 관내 여러 곳에 개설
- 일본어 자원봉사자 등이 일본어 교재를 활용하면서 부교재 또는 보조교재를 작성·분류하고, 교재의 유통방안 등 연구

< 한글교육 프로그램 예시 : 외국인 근로자 대상 >

구 분	수준별	교 육 내 용
초급과정	·의사소통 상황별 필요도 : 고 ·의사소통 상황별 난이도 : 저	 한국어로 자기 이름과 나라 소개하기 나이 말하기 다른 사람의 소개를 듣고 다른 사람의 나라와 이름 알아듣기 물건 개수 세기 시간 말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회사 내 사무실 혹은 화장실 위치 물어보기 물건의 위치 듣고 찾기 작업반장과 잔업시간 조정하기 작업중 모르는 것 질문하기 작업장 주의 사항 읽고 이해하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중급과정	·의사소통 상황별 필요도 : 고 ·의사소통 상황별 난이도 : 고	 지난 주말 혹은 어제 한 일 말하기 회사의 고용 조건 이해하기 작업장 혹은 기숙사의 금지 사항 듣고 이해하기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혹은 공구에 대해 묻고 이해하기 작업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해명하기 월급 명세표의 항목 이해하기 음식 재료에 대한 질문 및 기호에 따른 내용 주문하기 한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알아듣기 약국 혹은 병원에서 증상 설명하기 친구에게 가족 소개하기 동료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상담하기 게시판에서 한국어 학습기관에 대한 정보 얻기
고급과정	필요도 : 저	 친구의 외모 묘사하기 친구의 성격 표현하기 주말 계획 혹은 장래 말하기 한국문화에 대해 질문하기 한국인에게 자기 종교에 대해 설명하기 한국 신문 읽기 한국 드라마 보고 이해하기 은행에서 송금하기 고용주들의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 한국어교사 양성기관 현황 >

운영기관	과정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자 과정	02-961-0135	gaya.khu.ac.kr/koredu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042-821-5276	lifelong.cnu.ac.kr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 연구센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53-810-3561	ccrk.yu.ac.kr
경북대학교 국어생활상담소	한국어교육 전문가 과정	053-950-7497	knukorean.knu.ac.kr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자 양성과정	063-270-2250	lec.chonbuk.ac.kr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051-999-5992	klc.silla.ac.kr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02-760-1300	home.skku.edu/~sli/4/t tp_iljung.htm
강남대학교 평생어학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31-275-7400	edukangnam.ac.kr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043-261-3214	cie.chungbuk.ac.kr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55-789-2795	www.changwon.ac.kr/~ lang
중앙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외국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02-820-6237	korean.cau.ac.kr/progra m/trainning.html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2-450-3075	kfli.konkuk.ac.kr/korea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사 자격증 과정	02-3668-4431	cle.knou.ac.kr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센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2-764-7825	cklc.smu.ac.kr/sub08.ph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2-709-2217	user.dankook.ac.kr/~ild ku/korean-t.html
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강사 양성 과정	051-640-3231	lec.pufs.ac.kr/kschool/k school1.aspx
배재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전문교사 양성 과정	042-520-5730	www.pcu.ac.kr/~kli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053-580-6352	intlcenter.kmu.ac.kr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051-510-3301	pnuls.pusan.ac.kr/pnuls. htm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02-961-4174	www.hufs.ac.kr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02-3290-1455	kola.korea.ac.kr/klcc

2-2.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 고학력, 전문직종 종사자 등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개발 활용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거주외국인을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 후계세대 육성

□ 운영 방향

- 거주 여건 외국인의 수용 능력을 감안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국어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농촌, 도시), 거주여건별(외국인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정주형태를 감안 교육시간과 교육매체를 탄력적으로 운영 ※ :

□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외국어 전문가 양성

- 시 도 단위 또는 권역별 국제센터 등에서 지속적 전문적으로 추진
 - 지역의 RHRD사업 등과 연계
- 국적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회환에 중국어 등가 가능한 고학력 외국인을 언어권별로 확보 후 한국어 및 교수기법 등 관련분야 교육 실시
- 문화유산해설사, 원어민 교사, 국제행사 통역, 민원상담 요원 등 공공분야 취업 활용

컴퓨터 정보화 교육

- 인터넷을 통한 생활 지역정보 습득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
- 기존 주민정보화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컴퓨터 기초 인터넷 정보검색 등 교육
- 한글교육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기대
- 교육 후 컴퓨터 정보화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등 참여 동기 부여 방안도 고려

취업 기술교육

- 지역 노동관서 등과 협조 거주외국인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신설
 - 이 미용, 정보처리, 번역, 제과제빵, 비즈공예, 실내원예, 인테리어, 압화공예 등
- 자동차 수리 등 전문적인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교육은 민간업체 기관 위탁 수행
- 기술학교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 학위과정 병행 검토 ※ ()

귀환대비 직업훈련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동기 근절

- 출신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 자동차 정비 등 자격증 취득반과 창업교육 등에 중점
- 금리 이해, 주식 채권투자 등 경제교육도 병행 실시 검토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상담소 활용)
-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농기계 조잒특수작물 재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각적은 교육계획 수립
- 신지식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적인 안목 배양
- 교관(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연찬 및 강의기법 교육
- 벤처농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구직 지원

- 실직상태이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에 외국인 구인 구직 서비스 제공
- 구인 기업체의 상세한 정보보수, 작업장 기숙사 환경 등)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 국가별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인력 수급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참고 사례

원어민 강사 양성(경상남도)

-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거주외국인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한국어·교수기법 등을 교육 외국어 교사로 활용
- 거주외국인의 인적자원 개발활용,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참여 결혼이민자를 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 곡성군 및 전남과학대학 공동부담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3명을 전남과학대학(호텔조리김치발효과) 입학·교육 지원
- 외국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일체감 형성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 지원(전남 나주시)
- 외국인 여성 농가(축산 11, 과원임대 2, 시설원예 1)를 대상으로 사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 지원(70백만원)
- 현장 체험교육으로 농업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내 정착의식 고취 다국어 가능 직원 언어수당 지급(호주의 무역위원회)
- 호주무역위원회는 소속 직원의50%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 하고 있고, 위원회의 많은 지위들에 비영어권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기술이 요구
- 이민자 등 2개국어 사용 직원들이 그들의 언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수당을 지급

2-3. 민원 생활 법률 상담

- 법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를 통한 지역내 정주여건 향상

□ 운영 방향

-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 등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 언어별 분야별 상담 도우미 확보로 전문적인 상담 실시

□ 프로그램 운영 방법

상담원 모집·교육

-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원을 최대한 확보하되민간단체 지역주민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상담기법 등 교육 실시 ※ :

상담창구 개설

※

- 지자체 청사공공시설 또는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상담창구 개설
 - 지자체 민원실에 외국인 민원 전용창구 설치

-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이버 외국인 민원SYSTEM 구축 및 ARS 콜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상담창구 개설
- 법률상담 등 전문상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NGO 등 지역내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 지역신문방송,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다국어로 상담창구 개설 홍보

< 상담프로그램 운영 예시 >

대 상	상 담 내 용	주 관	비고
국제결혼	생활상담 : 시민권, 비자, 정보 안내, 생활 법률 등	지자체	
이 주 자	가족상담 : 결혼관련 법률, 취업, 부부관계,	건건 민간단체	
	자녀교육, 갈등예방 등		
의 국 인	기초상담 : 노동권, 생활법률, 체류자격 등	정부위탁기관	
기 기 년 근 로 자	문제상담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용	민간단체	
し エ ハ	주와의 마찰, 산업재해 등	상담전문가	
н н	노동권, 민주주의, 인권교육		
불 법 체류자	생활법률 교육 및 상담	민간단체	
체류자	개별적인 문제상담 등		

상담 시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언어별 상담봉사자 확보
- 국가 언어별로 상담요일을 정하여 효율성과 자원봉사자 활용도 제고(월 수: 베트남어, 화 목: 중국어, 금: 영어 등)
- 외국인 수요를 고려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야간, 주말 등)
- 지자체 방문 외국인에 대한 통역서비스 제공

※

상담결과 평가 및 활용

-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공유, 활동실적, 운영관리 등을 수행
-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 풀pool)의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축
- 수요처 및 활동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상담메뉴얼 제작배포

상담메뉴얼 수록 내용

- 임금 : 근로기준법 내용, 임금청구소송, 임금채권보장제도
- 산재 : 산재보험 일반 산재신청 절차 공상처리, 미등록자 산재문제
- 의료 : 의료상담 일반, 보건복지부 무료진료사업 의료비지원
- 취업 : 일자리 소개,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취업교육시 건강검진
- 체류 및 출입국: 각종 체류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신청, 출국, 여권 재발급,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 국제결혼 : 혼인신고, 혼인귀화절차, 국제결혼이주여성 취업, 이혼, 외국인 자녀 데려오기
- 형사문제 등 기타 : 임대보증금 반환, 성폭행, 교통사고 등

2-4. 행정정보 제공 및 생활편의 지원

-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주민과의 의사소통, 지자체의 각종 의무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얻기가 곤란
- 거주외국인이 지역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등 일상 생활상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지원 필요

① 다양한 언어 및 매체로 행정 생활정보 제공

- 주요 제공 정보내용
 -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및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
 - 거주(부동산), 대중교통 이용, 의료시설, 금융 관련 정보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 또는 관습
 - 지역에서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 등
- 각 지자체별로 거주외국인의 국적별 구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언어로 제공

*

- 효과적인 정보유통 통로 확보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커뮤니센터와 한국어 교실 등을 통한 정보제공이 효과적
- 다양한 미디어 활용
 - 각종 홍보물, FM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SMS 서비스 등

- 생활상담 창구 설치
 - 지역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에 대한 생활상담 창구 또는 정보센터 설치
 -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외국인이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설치
-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다언어로 정보 제공
 - 통역 자원봉사자 육성
 - 거주외국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거주외국인 자국민 조직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제공
- 정보제공자로 거주외국인 등을 활용
 - 거주외국인이 지역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는 같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가장 잘 이해
 - 지역의 거주외국인을 상담워 등으로 활용

2 주 거

- 직접적인 주거지원 방안 검토
 - 외국인 등록을 전제로 지자체 공영주택 입주자격 선별적 부여
 - 외국인 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설립을 통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 정보제공을 통한 주거지원
 - 임대주택 중개 및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부동산업자 정보 전세 및 월세 확정일자 등 한국의 주택에 관한 관습이나 시스템에 관한 정보 등 제공

- 주택 입주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쓰레기 분리 배출, 아파트 관리비 산정, 지역의 생활규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인 주민과의 갈등 사례 등에 대해
 - 읍 면 동사무소나 마을단위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반상회 부녀회 청년회 가입 등을 통해 연락체계 구축
-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 내에 상담창구 설치 등 검토

③ 의 료

- 외국어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 약국 정보 제공
 - 지역에 외국어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 경유 각종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주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 의료 문진표를 다양한 언어로 표기
 - 보건소 등 진료시 의료 문진표 등을 다국어로 표기하여 거주외국인이 진료시 안심하고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의료통역자 파견시스템 등 통역시스템 구축
 - 거주외국인 진료시 의료 통역이 가능한 자의 인적자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연결
 - 전화통역 등 3자 통화시스템 구축도 검토
- 건강검진 및 보건상담 실시
 - 보건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보건상담, 예방접종 등 실시

4 기 타

- 지자체 운영 도서관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에 외국자료 비치
 - 외국인의 모국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및 문화적 향수 해소
- 외국인을 위한 **중고가구거래 등 '알뜰장터'** 정기적 개설
 - '아름다운 가게' 등 지역내 사회복지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품목 비치
 - 저소득 거주외국인 가정에 중고컴퓨터 보급(다국어 키보드 등
- 소비생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
 - 물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외국어로 표기 안내토록 지도 ※ 【(0611) , 41%

, , ,

□ 참고 사례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에 의한 서비스 추진(시즈오카시)

- 영어·중국어·포루투칼어·한국어 도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도서 및 약 40여 종류의 잡지·신문을 소장
- 지역대학의 학생과 협력하여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 대회 등 이벤트 개최

다국어 생활정보센터 설치·운용(가나카와현 국제교류협회

- 지자체와 NGO가 발행하는 다언어 생활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정보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전파
- 사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디지털화하여IT를 활용하여 전송

2-5. 응급 구호 및 긴급 복지 지원

- 재해 재난 취약계층인 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응급 의료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비상시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Ⅱ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확대 구축

- 우선 외국어회화 능력을 보유한119대원을 파악·활용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Pool을 구축하여 운영
- 민간자원봉사단체(한국BBB운동 등) 연계하는 등 동시통역 서비스 체계 확립 방안 고려
- U-안심폰(소방방재청)과 연계, 언어·의료·지리정보 등 D/B 구축

무선페이징 시스템

- 개 념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위급상황에서 휴대용 발신기 또는 수혜자용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신고 되고
 - 119상황실에는 사전에 입력된 수혜자 정보가 상황실 모니터에 나타나 신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를 출동시켜
 -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및운용프로그램
- 현행 보급대상
 -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 시 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근 거 :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 운영 등 지침(소방방재청) 제4조

② 재해 재난 대비 거주외국인 대책 마련

-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 이용, 비상연락처 등 위기대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
 - 재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어학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방재계획에 외국인 참여방안 강구
 -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의 재난대비 프로그램 개발 및 민방위 훈련 실시
- 재난방재 매뉴얼을 다국어로 작성배포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소방안전점검 강화
 -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업체 및 재해 다발 업종 중점 실시 ※ :
 - 사업장내 소방설비 및 구조물 등 안전 점검
 -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재해 관련 안전교육 실시 등 ※

재난대비 메뉴얼 수록 내용

- 재난의 종류: 태풍, 호우, 대설, 지진, 황사, 폭염 등
-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 평상시 준비해야 할 비상물품
 - 재난발생시 안내방송 청취방법
 - 주민대피 장소(세부 약도 첨부)
 - 재난별 경보단계별 지역별 주민행동 요령
- 응급상황시 구조요청 방법 등

③ 응급의료 및 주거(러브하우스 등) 복지 지원 등

- 지자체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 지역내 의료시설(병원·의료원 등)과 민관파트너쉽을 체결하여 검진결과 의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상세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또는 모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참여방안 강구

④ 농촌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보호

- 농어촌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시 정부보육료의 50% 지원(농림부, 50ha미만 농지소유 농가)
-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에 포함
 - 소득 및 영양위험기준 등에 해당되는 경우6 8개월 동안 영양교육 및 대상기준별 보충식품 지舱인당 평균 7만원 상당/월)

***** 200%

- 신청한 자에게 출산 전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 영양관리에 관해 교육하고필요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
- 저소득 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산전 후 지원
 -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분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
 - 영·유아 예방접종,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유아·임산부 건강검진 등 지원
- 임산·출산·자녀양육법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 발간·배포
 - 출산, 자녀양육법 등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

참고 : 국가의 외국인 복지 시책

① 긴급 생계 지원

- 대 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지원범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비 지원
 -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모 부자복지시설 이용 등
-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 부자복지법

② 의료 지원

- 지역건강보험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 적용시점 : 외국인 등록일(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소신고 등록일)로부터 소급 적용
- 자격상실 :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출국 예정일까지 강제 적용되어 임의탈퇴는 불가
- 직장건강보험
 - 적용대상 :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 자격기한 : 취업시 부터 퇴직시 까지 지속

*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보건복지부)
 - 대 상 : 입국후 90일 경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국적취득시 종료)와 그 자녀
 - 지원범위 : 1인당 500만원 한도(연간 횟수 제한없음)

***** 500

1,000

***** 1,000

80%

- 진료기관 : 국립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시 도지사 인증 의료기관(17개소)
- 응급환자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

□ 참고 사례

119구급환자 3자통화시스템 구축 운영(전라남도)

- 외국어 가능자를 119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시 언어장애 해소
-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 대학생 등을 적극 활용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경기도)
-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센터 병稅(곳)을 지정하고 외국어 가능 의료진 배치 및 외국인 진료 지원을 위 코디네이터 배치
- 도내 60개 병원과 응급 진료망을 구축하고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진료비 일부 지원

의료통역 자원봉사 육성강좌(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 NGO, 현 의료사회사업협회 현, 시 보건소, 시 국제교류협회 등의 협력을 얻어 의료통역 연수를 실시

재해시 다언어 정보 네트워크 구축(효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

○ 재해시 도움을 주기 위해 다국어로 표기된 시트표를 출판 하고, 재해를 입은 다른 지자체에도 제공

2-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한국인 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외국인 스스로도 지역주민으로 자각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의식 고양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 민방위 교육, 문화강좌 등에 다문화 강의 및 홍보물 상영 ※ : ' ', (sbs)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참여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강화

```
* '(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

'98. 9

('06 100 600 )
```

- 주말 및 방과 후 교실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해의 시간 및 문화배우기 사업 추진 *
-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혼혈인·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체 사업주 및 직원 등에게 다문화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시 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다문화 관련 교과 반영, 직장교육 등 활용
 - 여성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강사Pool 구성 및 권역별 순회 강연
- 다문화 교육 홍보 거점 구축 활용
 - 지역단위 별로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다문화 교육 홍보의 거점으로 하여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 외국인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교류 이벤트 등 개최

②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외국인 리더 및 자국민 모임 네트워크 육성
 -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국민 모임을 육성하고외국인 커뮤니티의 리더를 양성
 - 외국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리더와 연계 협조 강화
- 거주외국인의 의견을 지역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지자체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에 거주외국인 참여 촉진 방안 검토
 - 지자체 홈페이지에 외국인이 민원 및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실명 인증서비스 제공

※

- 거주외국인을 지방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 지자체 방문 외국인 상담 등을 위한 계약직 채용 검토 등
- 외국인 대표자 회의 등 정기적 개최시정에 반영

- 반상회 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모임에 거주외국인 참여
-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 표창 활성화
 - 거주외국인 가운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공헌한 경우
 - 그 활동을 평가하여 표창하는 방안 적극 검토 ** 16 (), 17 ()

③ 지역주민과의 화합 적극 유도

- 화합행사 개최
 - 주민 기업체 등 참여하는 문화 체육행사(외국인의 날 행사 등
 - 마을청소 등 공동활동 유도
 - 기관 기업 사회단체와 거주외국인간 자매결연 지원
- 한국 문화체험 활성화
 - 문화유적지 답사, 전통음식 만들기, 차례상 차리기 예절교육 등 실시
 - 외국인의 관심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한국의 생활방식과 정서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개발
-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 마울거리 조성, 각국 기념일 고유행사 개최 지원 등 외국인 자국민 모임과 문화 육성
 - 외국인 마을 거리 조성
 - 소규모 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
 - 한국명절시 또는 외국 민족별 고유행사 지원설 추석 대보름 송년행사 개최각국 국경일 기념품 전달 및 고유행사 지원

4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 활용
-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고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자원봉사의 무급성과 자발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지자체 조례)

*

○ 기관 단체간 정보공유와 조정 및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5 민간단체 지원

○ 각종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

○ 공공·민간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지원대상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 방지로 사업효과 극대화

50

- 부적격 단체의 난립 방지 등 부작용 최소화
 -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시 단체의 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등을 적극 유도
 - 상담일지 작성 의무화 운영비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 검토

민간단체 지원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제2항(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미치어 피오하 해정기의 및 이 법이 정치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자부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 사례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부산시)

- '03.8월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협의체를 창립6개국 24명) 하고 연 2회 정기회를 개최
 - * '04 '05 APEC (23)
- 거주외국인으로부터 애로사항 수렴 및 시정홍보 등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 전문가·법률가 등으로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제시
- 지자체와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네크워킹을 구축 효과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안산시)
- 나후되고 슬럼화되어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원곡동 일대를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관광명소로 육성
 - 간판정비, 만남의 광장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 등
-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외국인 자조조직(브라질 친우회)
- 시 관내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02년 설립
- 브라질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학용품 재활용, 학교생활 설명회, 포루투갈어 교실 등을 운영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V

1. 국내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사례

1-1. 총괄분야(추진체제)	85
①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서울특별시)	85
②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운영 지원광주광역시)	87
③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여성남도)	88
④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경상북도)	89
5 서울용산국제학교 건립(서울특별시)	
⑥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서울특별시)	92
1-2. 한국어 및 기초생활, 기술교육 분야	93
① 외국인 한국어 강좌(부산시 국제교류재단	93
②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경기도)	94
③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경상남도)	95
④ "컴퓨터교실" 운영(대구광역시 서구)	96
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충남 보령교육청)	
⑥ 결혼이민자 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7 외국인여성 영농정착 지원사업전남 나주시)	
8 통상모니터 요원 운영대구광역시)	100
1-3. 상담 및 정보제공 분야	101
①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상답(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	101
②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경상북도)	102
③ 상담메뉴얼 제작 활용(대구광역시)	103
④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랑(Mentoring)제(충북 제천시)	104
5 여성결혼이민자 사랑의 후웬대모) 결연사업(경북 포항시)	105
⑥ 외국인 종합생활 안내책자 발전부산광역시)	
7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실명인증서비스 제광서울시 서초구)	
8 외국인 ARS 콜센터 설치 운영(전남 목포시)	
9 외국인을 위한 공무원 통역서비스 제공서울 경기도)	
1-4. 생활편의·복지 지원 분야	110
[] 도서과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운영전남 여수시)	110

	2	사랑의 PC지원(경기도 안산시)	111
	3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대전광역시)	112
	4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전남 여수시)	113
	5	저소득 외국인 복지분야 지원 추진(울산광역시 북구)	114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전남 여수시)	115
	7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전남 곡성군)	116
	8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유학생 지원(강원도 정선군 서울시 광진구)	117
1	-5. ·	응급 구호 및 의료지원 분야	118
	1	Help me 119 구조구급 서비스(울산광역시)	118
	2	외국인 구급환자3자 통화시스템 구축운영전라남도)	119
	3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경기도)	120
	4	외국인근로자 자녀 급식비 지원서울시 성동구)	121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전라남도)	122
	6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123
	7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서울특별시)	124
	8	의료봉사단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충청북도)	125
1.	-6. ¹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126
		외국인 대표자 회의 운영부산광역시)	
		포린카운셀러 운영(대전광역시)	
	3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128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서울특별시)	
	5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홍보전남 보성군)	130
	6	다문화수용을 위한 지역사회구성원 교육경상남도)	131
	7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산시국제교류재단	132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경기도 안산시)	
	9	독일마을 조성(경남 남해군)	134
	10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서울특별시)	135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인천광역시 남구)	
	12	외국인근로자 미니 월드컵대회 개최경남 거제시)	137
	13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전북 순창군)	138
	14	외국인근로자 거리청소 실세경기도 안산시)	139

1-1. 총괄분야(추진체제)

Ⅱ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서울특별시)

- 거주 방문 외국인에게 비즈니스 및 생활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제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연 혁
 - 2003. 4.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
 - 2003. 6. 개관(서울시청 별관),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운영위탁
 - 2004.1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 분소 개관
 - 2006. 2.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로 서울시청 본관으로 이전
- 위 치:시청 본관 2층 홍보관내 15평
- 인 원 : 직원 6명(SBA 4명, 외부업체 파견 2명), 외국인자원봉사자 18명(상담 10명, MRS 8명)

□ 주요업무

-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 등 외국인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 홈페이지(http://shc.seoul.go.kr) 운영 서비스 내용, 게시판, 새소식, 포럼, 행사 등 안내
- 외국인취업시스템(http://jobs.seoul.go.kr) 운영으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자문위원회(생활부문, 투자부문) 운영 분기 각 1회
- 서울 인포메이션 페어 운영(년1회) 외국인들이 서울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한 필요 정보교류의 장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외국인 잠재투자자들에게 서울의 산업경제 및 투자환경 생활환경 홍보물 제작 배포 (Doing Business in Seoul, SHC, MRS 리플렛 등)
- 서울타운미팅, 외국인커뮤니티지원사업 등

□ 운영실적

'06.10월말 현재

(단위:건)

	상	담 실	실 적			취업	출입국	
상 담 데스크	Hot-line	외 국 인 자원봉사	영어문서 접수처리	MRS	소계	지 원	분 소	총 계
2,733	460	292	0	442	3,927	2,477	54,054	60,458

※

: '03 1,196 , '04 2,472 , '05 3,997

- 주요상담사례
 - 외국인투자 : 서울에서 기업 설립절차 및 필요한 서류
 - 생활민원 : 비자 발급절차, 쓰레기 처리 요령, 위치정보 등
 - 의료분야 : 영어 진료 가능 병원, 의료보험 가입절차 등
 - 외국인취업: 취업정보 및 절차, 비자발급 등

- 거주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강화 등 사업분야 확대
- 서울시의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도모

②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운영 지원(광주광역시)

○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국제화에 기여

□ 국제교류센터 개요

- 소 재 지 : 동구 금남로 1-1 전일빌딩 509호(68평 규모)
- 설 립 일 : '99. 4. 2(비영리법인)
- 회 원 수 : 340명
- 이사장: 윤장현(YMCA 재단이사장) / 소장 : 신경구(전대 영문과 교수)
- 운영인력: 7명(상근 2, 비상근 5)

□ 주요 사업

- 월간 Gwangju News(영문판) 발행
- 한국어 학당, 인권정보실, 토요특강 등 운영
- 광주 외국인의 날 개최 및 운영
- 문화유적 답사, 교류음악회 등 외국인 대상 각종 문화활동 전개

□ 추진 실적

- 교류센터 운영비 지원27백만원)
- 외국인의 날('06. 9. 23~24, 조선대) 행사비 보조(10.8백만원)
- 공익성 기부금 손금 인정단체 추천재정경제부, '06. 10. 10)

□ 향후 추진계획

-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7백만원)
 - 교류센터 운영사업비(30백만원) 및 사무실 임차료(25백만원)
 - 광주외국인의 날 행사비 보조12백만원)

③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경상남도)

□ 사업개요

○ 사업구분: 자체사업(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소관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 추진기간 : '06. 2. 14 '06. 4.30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조사대상 : 도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국적 취득 여부 불문

○ 설문내용: 5개 국어 번역 조사(중국어, 일어,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

구 분	내 용
계	6항목
현황 및 가족일반	국제결혼가정 현황('06.3현재),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족유형
가족관계 및 문제	시부모 남편과의 관계, 친척과의 문제, 부부갈등, 친척간의 문제 등
자녀관계 및 문제	자녀 연령 및 현황구성, 자녀양육, 자녀학업 등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 취업여부, 노동시간, 경제생활 실태 등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 활동 여부이웃과 친구관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서비스 욕구파악, 정부 지원 요망사항 등

- 조사단위 및 방법
 - "가정"을 조사단위로 설정 방문 전수 조사 실시
- 사업실적: 1,182세대 조사완료 및 조사결과 정책 반영
 - → 다문화 다민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06.5.29)

④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경상북도)

-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부적%경제곤란, 자녀교육, 가족갈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 별도 TF를 구성하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07.1)

□ 추진 경과

-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사례 분석
 - 국가 지역현황 및 시 군의 사업내용과 실태 파악
 - 관계 중앙부처(여성가족부 등12개)와 타 자치단체 정책 분석
- 종합대책 수립 의견수렴 및 협의 조정
 - 도 및 시 군 관계부서, 교육청, 경찰청, 여성정책개발원 등 ※ ,

□ 추진 계획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정비

-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 민 관, 전문인력 혼합으로 '외국인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 '행복가족 어울림 협력체계 구축
 - 도 시군 유관단체로 구성된 공동 행정체계 구축
- (가칭)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 거주외국인 지원 종합기금 설치
 - 기금규모 50억, 도와 시 군 및 민간 공동출연 조성 검토
- 주한 대사관, 해외 기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결혼 및 이주 정착 지원사업

-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 및 결혼 중개업체 지도 관리
- 입국 및 정착 귀화절차 지원
 - 종합메뉴얼 작성 배포, 행정사항 사전고지제 이행 교육 및 조기적응 지워사업
- 통합 교육체계 구축
 - 전문강사 공동 풀 구성 시군 순회교육 실시
 - 분야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교재 제작
- 가족사랑 '함께 나눔' 사업
 - 사회 종교단체 연결, 친정만들기(대모)사업 지속 추진
 - 영상편지 또는 가족사진을 촬영해 고향 친정집에 보내주기 등
- 찾아가는 교육, '새경북 신계몽 운동'
 - 면 마을 단위의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자원봉사, 대학생 활용) 경제 및 가족생활 지원사업
- '희망 일자리' 지원 창출사업
 - 학력 언어 경력 등 인력풀 구성 다문화 외국어 강사 등 활용
- '새경북 행복가족 통장 발급
 -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특별 금융상품 제공
- 미취학 아동 보육 결연지원 및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

-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으로서 행복과 자긍심 고취
-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5 서울용산국제학교 건립(서울특별시)

- 접근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및 외국공관이 집중되어 있는 용산 주변에 학교부지 선정
-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역할 분담하여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2004. 6 ~ 2006. 6
- 규 모
 - 학생수용 : 약 1,000명 정도, 건축면적 : 약 7,000여평(지해층, 지상3층)
- 건립방법 : 부지제공(서울시), 학교시설 건축(산자부, 학교법인)
- 소요예산 : 350억원(산자부 100억원, 학교법인 250억원)

□ 추진경과

- '03. 12. : 용산외국인학교 건립방침
- '04. 1. : 설립준비 Task Force 구성(산자부)
- '04. 4.: 학교재단법인 인가 등록

* : , AmCham

- '04. 5.: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시설계획과)
 - 위 치:용산구 한남동 산10-33(보광동정수장 부지)
- '04. 9. :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 '04. 12. : 학교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 '05. 3. : 학교건축 허가(용산구)
- '05. 3. : 부지임대차 계약체결(서울시↔학교재단)
- '06. 6. : 학교 준공식 개최

□기대효과

○ 최고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을 통한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 서울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로 육성

⑤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서울특별시)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해소
- 우리문화 이해의 기획 제공 및 한국의 좋은 이미지 확산

□ 시설개요

- 위 치 : 성동구 홍익동 147-22
- 규 모 : 부지 50평, 건평 137평(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체력단련실 사무실, 상담실, 한국어교실, 인터넷교실 등
- 개 원 일 : '01.12.14
- 운 영: 사단법인 세계선린회 에 운영 위탁

□ 주요사업

- 상담사업 : 노동 법률 상담소 운영, 생활 취업 안내 등
- 교육문화사업: 한국어교실운영, 정보통신교육, 한국문화 탐방
- 생활복지사업: 무료진료, 체력단련실 운영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 송년위안잔치 등
- 조사홍보사업: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집 발간소식지, 생활 가이드북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 지역내역: '06년 200백만원

- 인 건 비 : 연간 급여액으로 요청한 금액
- 운 영 비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월정액으로 계상한 금액
- 사 업 비 : 사업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개산액

1-2. 한국어 및 기초생활, 기술교육 분야

Ⅱ 외국인 한국어 강좌(부산시 국제교류재단)

- 부산 거주 외국인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한국어강좌 실시
- 외국인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외국인 커뮤니티 결성 유도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06년 7월 ~ 11월(5개월)

***** 2006. 5 '

○ 장 소 : 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

○ 운영횟수 : 초 중급 각 주1회 2시간씩(각각 40시간)

○ 수강인원 : 80명(초급 40, 중급 40) / 13개국 외국인 수강

□ 향후 추진계획

-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좌 증설기존 2개 과정 → 3개 과정)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4분기로 구분, 상시 운영

-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유도
- 거주에 필요한 언어습득으로 생활적응력 강화
- 한국어 사용자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②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경기도)

□ 사업내용

○ 기 간 : '06. 10. 21 ~ '06. 12. 31(10주 20회)

○ 장 소 : 해당 사업장내

○ 교육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5개기업 4개국 44명

업체명	업체명 소재지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국적 인원		교육장소	교육시간	
			44	긴전			
(주)에이치 케이벨브	목내동 396	윤일중	중국	7	당사 교육원	주 2회(화, 목) (19:00~20:00)	
윤진플라노밀러	성곡동 730-3	이종옥	필리핀	2	사무실	주 2회(화, 금) (12:30~13:30)	
삼우산기(주)	신길동 1049-1	정형로	인도네시아	9	사내식당	주1회 2시간(토) (18:00~20:00)	
(주) 세양	목내동 398-1	박준욱	인도네시아	7	사내식당	주1회 2시간(토) (18:00~20:00)	
			태국	14		주 2회(화, 목)	
(주)이노메탈	성곡동 644-2	이건국	인도네시아	5	회의실	(08:00~09:00)	

○ 교육방법 : 사업장 근로여건에 맞추어 탄력적 조정 가능 틈새시간 활용

□ 사업성과

-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
-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틈새시간 활용으로 기업의 부담감 해소
- 교육강사를 활용한 기업주와 근로자간 의사소통의 역할 수행

③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경상남도)

-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의 외국어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어 회회(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전문기관에 위탁, 한국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여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교사로 활용
- 사 업 비: 126백만원(경남인적자원센터 50, 도 38, 시군 38)

□ 추진실적

- 원어민강사 양성: 64명(´06. 6. 19 9. 8)
- 강사 파견 및 활용: 50명, 41개센터(600명수강) / '06.9.18 12.30
- 방과후 학교로 사업 확대: 도 교육청과 강사파견 협약체결(07.1.12)

□ 향후 추진계획

- 원어민 강사 양성: 2010년 까지 200명(매년 50명)
- 방과후 학교 원어민강사 파견 사업 추진: '07. 3 12월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기회 제공
- 지역내 저소득 아동의 외국어 학습효과 거양 및 사교육비 절감

④ "컴퓨터교실" 운영(대구광역시 서구)

- 한국문화 이해증진 사업의 한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운영
- 컴퓨터를 통해 한글을 익히는 효과와 다양한 정보 지식 습득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년중(2001년 ~ 현재)

○ 사업내용: 외국인컴퓨터경연대회1회(2001.12.20)

○ 대 상: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가정880여명

○ 사 업 비: 1,000천원정도(복지관에서 전액지원)

○ 기 관 명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053-353-8310)

□ 향후계획

○ 사업기간 : 2007. 1~12월(주1회, 매주 화요일)

○ 사업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가정100여명

- 인터넷을 통해 생활정보 습득 능력 향상
- 한국 문화의 이해력을 돕는데 기여

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충남 보령교육청)

- 거주 외국인을 통한 방과 후 외래 강사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 기초능력 배양

□ 추진 실적

- 대상 학교 : 남포초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운영(13:00~17:30) 외국어(영어, 중국어)
- 외래 강사 프로그램 현황 2명

연번	프로그램	강사명	학년	운영시간	비고
1	생활영어	Gray Mills	전학년	1-2학년 : 월(6교시),수(5교시) 3-4학년 : 수.목 6교시 5-6학년 : 월.목 7교시	
2	생활중국어	유 화	3-6학년	3-4학년 : 화.금 6교시 5-6학년 : 화.금 7교시	-

- 열악한 농촌교육 환경속에서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과 학생들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기초 능력을 배양
- 낙후된 농촌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⑥ 결혼이민자 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 시책내용

○ 추진기간 : 2006. 3. ~ 2008. 2.

○ 대상인원: 3명

○ 추진주체 : 곡성군

○ 협력기관 : 전남과학대학(장학금 지원)

○ 사 업 비: 1,800천원('06)

□ 추진실적

○ 2006년 전남과학대학 재학중: 3명

○ 학교 및 학과 : 전남과학대학 호텔조리김치발효과

○ 학비지원 : 전남과학대학, 군 공동 부담

□ 개선방안

○ 외국인 대상 2007년도 희망학과 수요조사

○ 전남과학대학과 협의를 통한 외국인 장학금 지원

- 외국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
- 지역사회의 일체감 형성

7 외국인여성 영농정착 지원사업(전남 나주시)

- 외국인 주부의 영농현장 체험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서 적응력 제고와 지역내 정착의식 고취
- 소규모 영농 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图 통상모니터 요원 운영(대구광역시)

-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통상모니터로 위촉 함으로서 친 대구인사 양성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상관련 자료수집인턴쉽 운영, 통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통상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촉대상 : 20여명(대구 경북지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 주요활동
 - 통상증진을 위한 자국의 정보 및 자료 수집 분석 제출
 - 지역 유망 수출상품의 자국내 홍보거래선 정보 및 판매알선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 정도
- 사업시행: 대구상공회의소

□ 통상모니터 위촉

(단위: 명)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위촉인원	6	7	6	5	6	16	19	21	23	27	40	32

- 대구시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 및 타국 생활에서의 사기 진작
- 귀국 후 우호적 홍보요워 역할 기대

1-3. 상담 및 정보제공 분야

□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

- 인천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들에 관한 전문가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하여
- 장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제도시 인천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 기 : '06. 7. 16 12. 2(매월 제1주 토요일, 제3주 일요일)

○ 대 상: 인천거주 외국인

○ 장 소 : 인천국제교류센터 회의실

○ 내 용 : 임금체불, 비자, 이혼, 국적취득, 퇴직금 미지급 등

□ 상담결과 : 20건(방문 및 전화상담)

국적	학업/	국제결혼 /이혼	임금	퇴직금	비자/	가정	강제	비지
취득	취업(연금)		체불	미지급	출입국	불화	해고	니스
1	4	1	4	4	2	2	1	1

□ 향후 추진계획

- 인터넷전화)상담 채널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 실시
- 상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및 타 분(위료 등)에 대한 확대방안 검토

- 인천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향후센터의 외국인 대상 사업 토대마련
- 거주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싥다문화존중의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

②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경상북도)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

□ 추진실적

- 외국인 지원단체 위탁운영 실시
 - '06년 : 6개소(구미 3, 경주 2, 포항 1)

구 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30), 보현의 집(15), 제일교회(15)

경 주 : 경주YMCA(15), 외동읍청년회(15)

포 항: 경동교회(30)

사업비: 120백만원(도비 60, 시비 60)

- '05년 : 구미시 3개소

구 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30), 보현의 집(15), 제일교회(15)

사업비: 60백만원(도 30, 구미시 30)

- '06년 상담실적: 6,500여건
 - 고충상담 외 의료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행사 등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상담센터간 운영노하우 전수 등의 네트워킹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 지원예산 증가로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수혜자 확대

- 고충해소 및 사회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 사용자와의 갈등 완화 및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③ 상담메뉴얼 제작 활용(대구광역시)

-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상담 업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방법 모색
- 상담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동남아 국가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상담일지 제잒활용
-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담 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 추진실적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된 상담 메뉴얼 제작 활용
-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홍보지 제작
- 인터넷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상담 매뉴얼 제작 어권 확대(3개국 → 6개국)
- 상담활동 홍보지 제작, 발행 확대(격월→매월)

- 상담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상담자들의 업무 효율성 확대
- 홍보책자 발행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마인드 형성

④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Mentoring)제(충북 제천시)

시책내용

○ 대 상 : 여성결혼이민자

○ 기 간 : 2006. 9월 ~ 지속적으로

○ 주 관 : 제천시(복지사업과)

○ 멘 토 : 제천시 상담도우미(대표 : 윤영옥 외 9명)

○ 멘 티 : 여성결혼이민자 중 조언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 추진개요 및 실적

- 멘토 멘티 선정 : 2006. 9월 / 멘터 1인당 13 ~ 14명
- 멘토교육(멘토링 기본교육): 2006. 9. 5
- 멘토링 기간 : 2006. 9. 6 ~지속적으로
- 멘토링 방법
 - 멘티가 겪고 있는 부부문제 및 자녀 교육문제 등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전화상담 실시(주 1회이상)
- 멘토대상자 : 134명(여성결혼이민자)

기대효과

- 사회 문화적 이질감에서 비롯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을 표현 공유하고자 상담도우미와 연결하는 멘토램Mentoring)화 실시
-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한 사연이나 성공담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 및 삶의 용기를 제공

5 여성결혼이민자 사랑의 후원(대모) 결연사업(경북 포항시)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고립감, 경제적 빈곤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멘토링Mentoring)사업 추진
- 멘토인 자원봉사자들이 멘티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혜와 신뢰로써 인생을 이끌어 주는 후견역할 담당

□ 추진실적

- 2006년 결연실적 : 21건
 -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친정어머니 역할 수행
 - 명절, 절기 등에 대한 조언으로 한국문화 이해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생활상담과 한국문화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후견활동 전개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 이주여성들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감동이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터전 마련

⑥ 외국인 종합생활 안내책자 발간(부산광역시)

-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종합정보 생활 안내책자 제작
- 외국인 입장 고려 서술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구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우선 제작 후 필요시 언어권별 확대

□ 추진실적

○ 책자명칭: Life in Busan

○ 발행부수 : 9,000부(영 일 러문 각 2,000, 중문3,000)

○ 발행시기 : 영문(4월), 일문 중문(7월), 러시아어(12월)

○ 수록내용 : 가정, 생활, 통신, 긴급구조, 법규, 의료, 노동, 기관정보 등

○ 책자배부 : 유관기관, 유학생, 각종 국제행사, 재단행사 및 방문객 등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신규 자료 추가, 기존 수록 내용 변경 및 보완 수록
 - 교통카드 환승제도, 버스 노선 변경, 각종 기관 연락처 수정 등
- 부산 거주외국인의 국적별 인원을 고려다양한 언어로 발간
- 유관기관 비치를 통한 적극적인 배부 및 각종 홈페이지 등 게재
 - 출입국관리소 관광안내소, 호텔, 벡스코, 외국인 학교 등

-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을 통한 부산의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 생활전반의 정보를 수록 상시 활용 가능한 생활지침서로 활용
- 외국인의 부산거주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 가능

①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실명인증서비스 제공(서울시 서초구)

세계속의 서초구를 지향하고자 거주 외국인은 물론 서초구를 방문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서초구 및 서초구청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사업개요

- 인터넷을 이용, 서초구의 행정 문화 생활정보를 제공하고Q & A 게시판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불편 및 문의사항을 접수 및 처리
- 홈페이지에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생활민원 및 행정발전 아이디어 접수 처리

□ 추진실적

- 영어, 프랑스어 홈페이지 오픈: 2000. 8.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홈페이지 개편: 2002. 1. 7
- 중국어 홈페이지 오픈: 2002. 5. 8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홈페이지 개편: 2003. 10. 1
-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 실시: 2006. 10. 1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관련 민원 및 생활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외국어 번역 자원봉사자를 모집 2007년 3월부터 외국어 번역 및 모니터링 실시
-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모든 국가의 홈페이지 개발 추진

□ 기대효과

○ 서초구청 외국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을 제공함으로써 세계행정을 실현

图 외국인 ARS 콜센터 설치 운영(전남 목포시)

언어소통 장애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ARS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 및 통역서비스로 지역생활 정착 지원

□ 사업개요

- 목포거주 외국인 등록자수: 1,001명(2006. 10월말)
- ARS 콜센터 운영은 관련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운영
- 전문상담요원을 통해 인권문제 및 개인 고충 상담 해결

□ 추진실적

- ARS 콜센터 운영위탁 협약: 2006. 4. 20
 - 기 관 명 :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소장 김 숙)
 - 운영요원: 15명(전문상담요원 3, 자원봉사 도우미 12)
 - 예산지원 : 20,820천원(인건비

⑨ 외국인을 위한 공무원 통역서비스 제공(서울 경기도)

- □ 외국인을 위한 통역창구 운영(서울시 마포구)
 - 목 적 : 한국어를 모르는 내방 외국인들에게 통역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통역도우미 운영
 - 영어 7명, 중국어 2명, 일본어 4명
 - 추진성과
 - 국가 신뢰도 향상은 물론 관광마포 구현을 통한 관광수입 증가
 - 국제화 도시로서 발돋음하는 지역 마포 구현

□ 공무원 도우미 구성 운영(경기도)

- 목 적 :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의 생활 및 체류 지원
- 추진실적
 - 언어별 공무원 도우미 선정

(단위: 명)

구 분	총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2개국 이상
26개 시군	157	65	45	33	2	2	10

공무원 도우미 발대식 개최('06. 8월)

※

- 공무원 도우미 안내책자 배부: 2,000부
- 콜링카드(Calling Card) 배부 : 156매
- 추진성과 : 생활 및 체류 지원을 통한 내향적 국제화의 발전 도모

1-4. 생활편의 복지 지원 분야

□ 도서관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운영(전남 여수시)

거주외국인의 문화욕구 충족 및 편의 제공를 위해 도서관내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용자료 코너 설치 운영
-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외국어 자료 수집 비치
- 국제 자매 우호도시 관련도서 비치로 상호 이해 및 유대강화

□ 추진실적

-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설치: 시립도서관 본관 자료실 내
- 외국어 자료 수집 비치: 452권(영어도서 242, 일본어 도서 210)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 도서 확대 비치: 예산의 10%(5개 도서관)
- 국제 자매 우호도시 관련 자료(7개국, 13개) 집중 수집
 - 분 야 : 문화, 정치, 산업, 지리 등 교류도시 전반에 관한 자료
 - 내 용 : 일반도서, 시청각 자료, 팜플렛, 간행물 등
 - 예산지원 : 24백만원(시비)
- 자료 활용
- 자료실 내 자매 우호도시 코너 설치 및 자료제공
- 거주 외국인 및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시 견학 코스화

□ 기대효과

○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편의제공으로 정착 기여

② 사랑의 PC지원(경기도 안산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컴퓨터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온라인상위정보 공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5. 9 연중

○ 대 상:외국인근로자 및 관련 민간단체

○ 추진방법

- 관련부서(정보통신과)와 연계, 중고 PC 무상배부(사후서비스 제외)
- 단체 및 개인을 통해 년중 신청서 접수 년말 일괄배분
- 단체 추천자 우선 선정 및 수령자격 별도기준 마련 배분

□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민간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수	74대	41대	33대

※ : , , ,

, , ,

M

- 정서적 소외감 해소 및 정보습득 기회제공
-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 내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③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대전광역시)

- 외국인유학생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대전의 국제화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도룡동(엑스포과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내
- 규 모 : 부지 1,360평, 연면적 2,130평(지하 1층, 지상 10층)
 - 수용인원 : 450명(2인실 224실, 장애인실 2실)
 -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 사업기간 : '05. 12 '07. 6 / 입주 '07. 8월
- 사 업 비 : 86억원(시 43, 8개 대학 43)

* :8 (, , , , KAIST, ,)

□ 추진실적

-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04. 4월
- 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05. 10월
- 기숙사 건립 기공식: '05. 12월

□ 향후 추진계획

- 기숙사 명칭 확정, '07 예산액 및 운영규정 마련: '07. 상반기
- 기숙사 건립비 21억원(총43억원) 출자 완료 : '07. 2월
- 건립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07. 6월 준공 예정

④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전남 여수시)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로 농촌거주 유도 및 정착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의 **및**세 이하 자녀중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금액:월 107천원(보육료, 교육비 등)
- 지원절차

□ '07년 추진계획

- 농업인 파악 및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비		
180명	196,213	150,933	45,280		

-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농촌 활성화 제고
-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

5 저소득 외국인 복지분야 지원 추진(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 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및 지원
 - 대 상 : 외국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저소득 외국인
 - 지원절차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지원 신청
 - 지원사항: 수급 책정후 최저생계 및 의료급여자녀교육비 등 지원
- 긴급 복지지원
 - 대 상 자 : 중한 질병이나 위기사항에 처한 자
 - 신청방법 : 복지콜센터 129신고 및 구청 긴급지원 담당 신청
- 복지관련 민원상담 창구 개설
- 교육희망자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주민자치센터, 북구 종합사회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 외국인 민원 통역 네트워크 구성

□ 추진실적

- 복지관련 민원상담 창구 개설
 - 외**깨댄** 민 통역

구설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전남 여수시)

국제결혼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농가도우미를 파견, 지원하여 지역내 정착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 지 원 액: 30천원 / 1일(자부담 6천원 포함)

○ 지원일수 : 30일 한도

□ 추진실적 : 3세대 2,220천원(일본 2, 베트남 1)

□ 향후 추진계획

○ 결혼이민 외국인 여성농업인 파악 및 시책 홍보

○ '07년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비	자 담	
20명	18,000	1,800	12,600	3,600	

-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유도
-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

7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전남 곡성군)

□ 시책 내용

-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
- 추진주체 : 곡성군
- 협력지원: 전남과학대학
- 사 업 비: 50,000천원(*06)

□ 추진 실적

- 제2차 혁신브랜드사업 선정: '06행정자치부
-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 용역보고회 개최: 2006. 11. 7.
 - 곡성군 사이버 지원센터로 운영
 - 외국인 지원 정책사업 수행공간으로 활용
 - 상담 및 인력관리
 - 취업정보, 이민자 본국 정보 제공
 - 국제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
 - 상거래 활동 지원
 - 다양한 다국어 지원(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결혼이민자 전용 홈페이지 제작 관련 사이트 링크

- 각종 정보, 자원, 제도 소개,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 결혼이민자의 의견 정책제안 등 수렴

- 图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유학생 지원(강원도 정선군 서울시 광진구)
 -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강원도 정선군)
 - 추진 실적
 - 지원기간 : 2006. 1. 12.
 - 예 산 액 : 20,000천원(군비)
 - 지원실적 : 4명 / 8,751천원('06.11월 현재)
 - ***** 56 33
 -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에 사실상 거쥬주민등록 확인)하는 외국인주부 가구 최초 수혜로부터 5년 경과 후 추가지원 가능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4인가족 기준 가구당 항공료왕복) 및 국내여비

-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부여 및 국제결혼 가정의 화합 도모
 -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로 국가 지역 이미지 제고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서울시 광진구)
 - 사업 개요
 - 목 적 : 외국인 유학생중 우수 학생을 선정 장학지원을 통해 면학의욕 진작 및 이미지 구축
 - 추진기간 : 매년 2회
 - 대 상 : 제3세계 외국인 유학생(초 중 고 대학 대학원)
 - 주 최 : 영동제약(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광진구
 - **추진실적** : '03년부터 총 335명에게 32,250만원 지급

1-5.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분야

Ⅱ Help me 119 구조구급 서비스(울산광역시)

- 국제회의 및 울산 거주 외국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지역내 관광산업 육성과 울산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대 상:국내 여행 또는 거주 외국인

○ 장 소 :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가 가능한 전지역

○ 내 용 : 구조구급, 길안내, 통역, 관계기관 안내 등

○ 제 공 자 : 구조구급대원, 119상황실 요원

□ 추진실적 : 36건 38명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회화 능력 보유 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 풀제도 운영
- 민간 자원봉사단체(한국BBB운동 등) 연계 동시통역 서비스체계 확립
- 소방방채청 U-안심폰 연계 외국인 안전망 구축 강화

- 외국인 안전망 확충으로 국제화된 울산의 경쟁력 지원
-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의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② 외국인 구급환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 운영(전라남도)

- 외국인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소통 미흡으로 구급활동 장애
- 외국어 능력자를119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언어장애 해소

□ 사업개요

- 3자간 통화시스템 구축: '06. 2 3월중
 -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신고) ⇔ 119상황실(구급차)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위촉: 9명(영어 3, 일본어 3, 중국어 3)
 - 자원봉사자 :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 대학생 등 능력자
- 시스템 운영: '06. 3월 이후

□ 추진실적

○ 외국인 통화실적: 1건

일 시	장 소	이송환자	국 적	사고유형
06. 9. 11 09:06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102동 1107호	니나브룩스	캐나다	화재(음식물 과열)

□ 향후 추진계획

- 119통합상황실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능력자 및 해외 연수자 2명(영어)을 배치하여 119헬프미 서비스 제공
- 소방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등 능력자 추가 배치

- 외국인에 대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으로119 위상 정립
- 효율적인 인력활용으로 선진소방 이미지 제고 및 고객감동 실천

③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경기도)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하여
- 화재 및 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에서 모니터하여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 추진 실적

○ 사 업 량 : 무선페이징시스템 단말기553대

○ 사업기간 : 2006. 3. ~ 12.

- 실 적
 -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 단말기를 소방공무원이 숙소 방문 설치
 - 소방서 상황실 119수보 라인에 KT와 협의연결 프로그램 입력
 - 외국인 숙소및 인적사항 등 정보를 무선페이징시스템에 입력 관리유지

□ 기대 효과

○ 산업재해 취약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소방이미지 제고

④ 외국인근로자 자녀 급식비 지원(서울시 성동구)

- 외국인근로자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들의 학습 활동과 현지 적응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이주노동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학습활동 및 언어 등 현지적응 애로사항 해소

□ 추진실적

- 2006년 지원실적: 13,020천원(시행: 2006.10월)
- 지원내역 : 총 73명
 - 시설이용자 : 28명×3,000원/1식×60일=5,040천원
 - 개 인 가 정 : 38명×3,500원/1식×60일=7,98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현황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실시 및 매년 지원범위 확대
- 2007년 지원 : 100명 101,375천원

-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
- 외국인 자녀의 체력증진 및 현지적응 애로사항 해소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전라남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지역통합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사실혼 제외) 및 그 자녀
- 사 업 비 : 26백만원('05년 10, '06년 16) 복권기금 100%
- 시행기관 : 도내 3개 의료원(순천, 강진, 목포)
- 지급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의한 진료비 지급
- 지급한도 : 1인당 5백만원
- 지원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 추진실적

- '05년도 : 2명 2,716천원(몽골 1, 중국 1)
- '06년도 : 2명 4,629천원(몽골 1, 중국 1)

□ 향후 추진계획

○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자 확대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무료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6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 거주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지정하여 지역내 병원들과 협력망 유지 및 통역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6. 1월 지속

○ 지정병원: 2개소(수원 아주대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 운영내용

- 센터 병원내 외국어가 가능한 의료진 배치
- 외국인 응급 진료망 구축(60개 병원)
- 센터 병원에 외국인 진료 지원업무를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 외국인 진료실 및 입원병동 환경개선

□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외래환자	입원환자	응급실내원
계	3,648	3,105	292	251
아주대병원	706	562	24	120
의정부 성모병원	2,942	2,543	268	131

'06 : 3,648 (30%)

□ 향후계획

-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 일부지원
- 외국인 응급진료망의 내실화

7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서울특별시)

○ 외국인근로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59%)되어 있으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의료지원대책이 필요함 ※ : ()

□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 검진대상 : 외국인 근로자 중 희망자
- 검진내용 : 15개항목(흉부 X-선 촬영, 피부질환, 혈압 등)
- 검진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위탁운영
- 검진방법 : 년간 24회 대형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
- 소요예산 : 142,000천원(시비100%)

□ 외국인 근로자 전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검진실시 결과 전염성질환자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비 1인당 3,000천원
- 지정기관 : 서울의료원, 시립서북병원,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복십자의원

○ 소요예산 : 158,000천원(시비100%)

□ 민간 자원봉사단체 무료 진료

- 서울시 의사회 봉사단체
 - 진료기간 : 주 1회 년중 실시
 - 진 료 팀 : 44개팀
 - 진료실적 : 27회 6,885명(2005년도 49회 8,642명)

○ 일반 민간 봉사단체

- 진료기간 : 주 1회 / 년중 실시
- 진 료 팀 : 정동교회 및 18개팀 진료 과목별로 진료

⑧ 의료봉사단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충청북도)

-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의료봉사 활동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사업 개요

- 일 시 : 월 1회(매월 셋째 주 일요일)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 대 상: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 활동인원 : 의사, 한의사, 약사, 통역 등 200여명
- 진료과목 : 7개 과목
 - 내과, 가정의학, 치과, 한방,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추진 실적

- 충북의료봉사단 조작('03. 3): 48명⇒ '06. 12. 현재 200여명 활동
- 협력병원 지정: 10개 병원(종합병원 5, 병원 5) ※ (.)
- 진료 실적 : 45회 2,948명('03. 4. 20. ~ 현재)

□ 기대 효과

○ 의료 자원봉사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질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1-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Ⅱ 외국인 대표자 회의 운영(부산광역시)

- 거주외국인으로 부터 애로사항을 수렴세계도시 위상에 걸맞는 정주여건 조성
- 변화된 제도와 시정홍보를 통한 한국사회 조기적응 유도

□ 사업개요

-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회의체 창費003년 8월)
- 연 2회 정기회의(※필요시 수시 회의
- 대표 위원수: 16개국 24명(업계, 학계, 유학생 등)
- 주요기능
 - 문화교류 친목도모, 부산시에 대한 이해와 시정참여 기회제공
 - 외국인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 청취

□ 추진실적

- '03년 : 창립총회(대표위원 20명 위촉), 정기회의 연 2회
- '04 '05년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신규위원 위촉
 - APEC 등 시정 홍보 및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건의23건

□ 향후 추진계획

- '07년 5월, 11월 정기회의 개최
- 대표위원 확대(20개국 30여명)로 회의체 활성화

-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으로 성장발전
-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 구현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② 포린카운셀러 운영(대전광역시)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발전적 제언, 자문,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

□ 사업방향

- 거주외국인을 대전시 포린카운셀러로 임명하고 시정참여 유도
- 생활하면서 느끼는 각종 문제와 대안을 시에 제보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우리시의 각종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운영시기: 연 2회 개최
 - ***** 1999 12 / 11 21
- 위촉위원: 13개국 23명
- 주요활동 : 시정에 대한 의견 제안 시정 체험, 시 외국어 자료에

대한 감수, 해외 우수사례 소개 등

□ 포린카운셀러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6. 10. 20(금) 16:30 ~ 19:30
- 장 소 : 중회의실(10층)
- 참 가: 포린카운셀러 22명/시 간부 및 실무 등8명
- 내 용 : 콜센터, 국제교류센터 활동 소개 및 토론 건의사항 청취 등

- 대전시의 국제화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기대
- 국제교류센터 개원에 따른 홍보 및 활용 제고
- 외국인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시정에 반영 기회 제공

③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 시책내용

- 농촌결혼이주여성 지원협의회 구성10명(전문가, 법률가등)
- 농촌결혼이주여성 지원협의회 개최: 3회 / 3백만원 / 10명

□ 추진실적

- 협의회 구성: 10명(관련기관4, 법조인1, 학계3. 공무원1)
- 협의회 개최: 2회(지역협의체간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논위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검토 및 수정을 통해 향후 각 분야의 활동계획 방안을 제시할수 있도록 유도
- 이주여성 정작지원을 위한 제기관 단체등과의 네트워킹 체계 수립

- 농촌결혼이주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참여로 이주여성의 통합적 관리운영기반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강구

④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서울특별시)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등 소속감 부여
- 통역 등 일감 연결로 거주외국인의 소득 증대 기여

□ 외국인 상담 봉사자 현황(내국인)

(단위: 명)

구 분	계	영 어	일 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이사어	기 타
계	575	415	108	12	4	2	34
통 역	575	415	108	12	4	2	34
상 담	0	0	0	0			

□ 추진 계획

○ 적극적인 홍보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거주외국인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 활동을 희망한 거주외국인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관리

○ ID카드, 인증서 발급

- ID카드는 등록과 동시, 인증서는 요청시 발급 배부

○ 상해보험 가입

- 자치구별로 가입하되 내국인과 형평에 맞도록 추진
- 활동복 제작 지급(내국인과 동일한 활동복
- 활동 실비 지급: 센터별 자체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1 4

8,000 (5,000 , 3,000)

2

○ 우수 봉사자 표창

- Hi-Seoul 자원봉사자 대회12월) 또는 자치구 촉진 대회시 표창인원의 일정비율을 거주외국인으로 선정
- 자원봉사활동을 통역 등 일감과 연결 추진

5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홍보(전남 보성군)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체계 및 시책 등에 대해 다양한 홍보로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 증대와 주민의 편견의식 등 불식

□ 사업개요

- 주기적인 발행 매체를 통해 외국인 지원시책의 적극 홍보
 - 시 기 : 년 중
 - 주요매체 : 보성소식지,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 신문형태의 군정소식지월 1회)에 외국인관련 시책 고정란 확보
 - 주요내용 : 군 자체 지원시책 인근 자치단체 소식 등

□ 추진실적

- 보성소식지에 외국인 지원시책 수록: 2007. 2월중 배부
- 주요 내용 : 교통 의료시설 등 생활 지역정보,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고충상담 코너 등

□ 향후 추진계획

- 신문형태의 군정소식지에 외국인관련 고정란 확보 2007. 5.
- 국내거주 외국인 체험수기와 우수작 시상 및 홍보 2007. 7.
- 가용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책의 적극 홍보: 년중
- 거주외국인 생활상 취재 및 보도자료 제공. 년중

-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지역내 일원으로 소속감 고취
- 지역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의식 해소

6 다문화수용을 위한 지역사회구성원 교육(경상남도)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교육 기회 필요
-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06. 9 12월
- 교육대상 : 지역주민
- 교육방법 : 전문강사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시 군 순회교육
- 교육내용
 - 다문화 가족의 이해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민들의역할
 - 국제화 시대에 지역구성원의 역할 등
- 소요사업비: 10백만원(도비)

□ 추진실적

- 교육참가 : 5,000명(이 통장, 부녀회장, 여성단체회원 등
- 결혼이민자 행복수기 발간 및 배부: 2,000권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사업 추진: 5,000명('07. 9 11월)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와 동일 생활권에 있는 지역구성원의 이민자 가정에 대한 수용과 이해 도모

7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산시국제교류재단)

- 부산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부산의 이미지 제고
- 외국인들간의 친목도모 및 커뮤니티 결성 촉진

□ 추진실적

○ 일 시 : 2006. 8. 12(5개월)

○ 장 소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등

○ 대 상 : 부산거주 모든 외국인

○ 주요내용: 한지공예(8월), 전통매듭(9월), 장구 가야금(10월)

전통 탈(11월), 김치 담그기(12월)

□ 향후 추진계획

-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시민 교류 증대
- 외국인 관련기관 및 각 대학교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
- 외국인의 관심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국문화의 이해도를 높여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통한 거주 편의 도모
- 체험활동을 통한 한국의 생활방식과 정서 습득 기회 제공
- 참가 외국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다양한 행사 참가 유도

⑧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경기도 안산시)

- 낙후되고 슬럼화된 공단개발 초기에 형성된 원곡동 지역의 도시 재개발 필요
-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육성

□ 사업개요

○ 외국인수 : 31,479명(주말 유동인구 50,000명)

○ 위 치 : 안산역 원곡본동 사이 준주거 지역

○ 면 적 : 90,769 (27,457평)

○ 지원단체: 11개 단체(외국인상점: 124개소)

□ 추진실적

○ 2006. 3.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경기도 지원 확정

○ 2006. 6. : 안산역 환승센터 경기도 지원 확정

○ 2006. 9. : 국경없는 마을 조성 장기발전방안 기본계획 용역과제 심의의결

○ 2006.11. : 만남의광장(원곡제3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계획

○ 국경 없는 마을 용역 : 2007. 2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 : 252개소

○ 만남의 광장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 : 2,898 /350m

○ 상징물 및 조형물 설치 : 6개소

□ 기대효과

○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 화합의 장 마련

9 독일마을 조성(경남 남해군)

□ 시책 내용

○ 어려운 시기에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 거주 교포들의 고국정착을 위한 생활지원 및 삶의 터전 마련

□ 추진 실적

- 2002. 5. : 독일주택 건축공사 착공(5동)
- 2002. 10. : 독일마을 회관 준공
- 2003. 9.: 기반시설 조성 완료
- 2005. 7. : 독일마을 매장(근린생활시설) 준공
- 2005. 7.: 제1회 독일어캠프
- 2006. 7.: 제2회 독일어캠프
- 2006. 11. : 주택준공 21동, 공사 중 11동

□ '07년 추진계획

- 미 착공된 택지에 대한 건축착공 독려
- 독일마을 체력단련실 등 주변정비 및 가로수 식재

- 독일의 이국문화와 우리 고유문화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 독일마을 매장(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한 독일음식 판매를 통한 과광객 유치

10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서울특별시)

- 거주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지원 외국인들에게 자국문화를 한국에 보여 줄 기회를 제공
-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 관광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간의 이해 증진

□ 추진 실적

연번	행 사 명	국 가	지원금액 (천원)	행사기간	행사장소
1	회화전시회	호주/ 뉴질랜드	5,000	'06.4.26~5.2	관 훈 갤러리
2	Le noir te va si bien	프랑스	3,000	'06.5.12~5.14	서 초 구민회관
3	회화전시회	세르비아	4,000	'06.6.15~6.30	국제교류재 단문화센터
4	럭비 토너먼트	다국적	3,000	'06.9.23	온수럭비 경 기 장
5	아동도서 삽화전	슬로 바키아	4,000	'06.9.27 10.7	래 미 안 갤 러 리
6	현대무용	이스라엘	4,000	′06.10.23~10.24	호 암 아 트 홀
7	전통무용	인도	5,000	'06.10.28~11.4	신라호텔
8	체코영화	체코	5,000	' 06.12.6 12.13	서울아트 시 네 마

□ 향후 추진계획

○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서울시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지원

□ 기대 효과

○ 외국인커뮤니티문화행사를 통한 상호교류 확대

[1]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인천광역시 남구)

- 인천지역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과 관련 기관들이 모여 단체별로 진행하던 개별행사를 공동행사로 개최함으로써
- 외국인과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추진실적

행 사 명	인천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체육대회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일 시	2006. 6. 4(일) 09:00	2006. 9. 24(일) 12:00
장 소	인천대학교 대운동장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및 야외공연장
주요내용	명랑운동회 축구, 농구, Ox퀴즈, 장기자랑 등	문화체험마당, 음식체험마당, 공연마당, 한국어노래자랑 등
참여인원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1,000여명	인천 거주 외국인 및 시민 2,500여명
소요예산 (남구)	금1,190천원(축구, ○× 퀴즈)	금2,400천원(한국어노래자랭)

□ 향후 추진계획

- 행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07년 예산편성시 광역시비 확보
- 적극적인 홍보 등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의 참여방안 강구

- 이주노동자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 및 지역사회통합을 유도
-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12 외국인근로자 미니 월드컵대회 개최(경남 거제시)

□ 시책 내용

○ 대우·삼성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축구팀을 구성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 운영

□ 추진실적

○ 일 시 : '06. 11. 25(토)

○ 장 소 : 삼성조선 A 구장

○ 참 여:11개국 7개팀

- 삼성중 거제조선소 소속 카메룬팀 1, 노르웨이·그리스·스위스 근로자 노르웨이팀 1

- 대주조선해양(주) 거제조선소 미국근로자팀 2, 영국근로자팀 1, 일본·독일·벨기에·에콰도르 근로자 다국적팀 1
- 40대로 구성된 거제시 생활체육 축구 동호회팀1
- 운영방법 : 토너먼트 방식, 전·후반 각 25분 진행
- 지원예산 : 5,000천원(시비)

□ 향후 추진계획

○ 축구경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종목도 발굴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대 효과

○ 외국인에 대한 시민 일체감 조성과 사기앙양 부여

13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전북 순창군)

시책내용

○ 사 업 명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6. 6 ~ 12(자체사업)

○ 계획인원:6명

○ 사 업 비: 30,000천원

추진실적

○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2006. 5. 18

개선방안

○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홍보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지원 추진

기대 효과

○ 농촌총각들의 고민해소를 통한 정주인구 유지 및 농촌기피 현상 극복

14 외국인근로자 거리청소 실시(경기도 안산시)

□ 추진 목적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무질서한 주변 환경을 개선
-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질서와 환경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거주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함

□ 추진 개요

○ 장 소 : 외국인밀집 거주 지역

○ 추진기간 : 2005. 7. 지속추진

○ 참여대상 : 외국인, 민간지원단체, 학생 등

○ 추진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거리청소 실시

- 각종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방법 홍보

-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 부과 홍보

□ 추진실적

일 시	회 수	참여인원	참여국가	비고
계	7회	300명		
2005년	4회	150명	스리랑카 외 4개국	
2006년	5회	280명	필 리 핀 외 5개국	

2. 외국의 거주외국인 지원사례

2-1.	일본의	지역	다문화	공생	시책1	.43
2-2.	호주의	다문화	구의	정책	1	.55
2-3.	독일의	이주외국	국인 사	회통합	정책1	.71

2-1. 일본의 지역

시책

① 추진 배경

- 그동안 지자체에서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90년대 말부터 '00년대 초에 걸쳐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시책의 체계화·종합화 진행
- 글로벌화와 인구감소 경향 등으로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시책이 전국적인 과제로 대두 ※ '04 200 , 10 1.5
- 이에 **총무성**은 '05.6월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한 **최초 보고서**를 '06.3월 제언
- 동 보고서를 기초로 '06.3.27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계획'을책정하여 각 및 에 통지

②「지역의

추진」개요

□ 지역의

의의

-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외국인주민의 수용 주체**
- 지역의 다문화공생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에도 기여

- □ 지역의 다문화공생 시책 기본개념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일본어 대화 능력부족에 기인한 다양한 문제발생 예방
 - 생활 지원
 -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전반에 걸쳐 지원책 시행
 -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 지역사회 내의 교류기회 부족으로 인한외국인주민의 고립 및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의 알력 방지
 -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 현, 시정촌, 지역국제화협회, 국제교류협회, NPO, NGO 등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 주체의 연계협력 도모

③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시책

-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 NGO 등과의 제휴에 의한 다국어 정보제공
 - 지역의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지역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 생활지원

○ 거 주

- 다양한 언어로 주택 관련 정보제공, 입주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자치회나 반상회 등에 외국인 주민 가입 촉구
- 외국인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단지 등에상담창구 설치

○ 교 육

- 취학 안내와 취학원조 제도 등다양한 언어로 정보 제공
- 교원 추가배치, 자원봉사와 연계한 학습 등 일본어 학습지원
- 부모·자식간, 보호자·학교간 커뮤니케이션 갭 문제를 학교 외에 자치회·NGO·기업 등 지역단위에서 포괄적으로 대응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응책 강구, 유아교육 제도 주지
- 진로지도 및 취직 지원, 국제이해 교육 추진
- 외국인 학교의 법적 지위 명확화

○ 노동 환경

- 직업소개소와 연계 취업지원 및 외국인 주민의 창업지원
- 상공회의소 등과 제휴하여 취업환경 개선

○ 의료·보건·복지

-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병원, 약국에 관한 정보 제공
- 의료 문진표를 다양한 언어로 표기
- 광역 의료통역자 파견 시스템 구축 건강진단 및 상담 실시
- 모자보건과 보육, 고령자·장애자에 대한 대응

○ 방 재

- 외국인주민에 대한 방재 교육·훈련, 긴급시 다양한 언어의 기상경보 전달, 피난유도 등 외국인주민용 방재대책 수립
- 긴급 시 외국인 주민의 소재 파악
- 재해시 통역 자원봉사자 육성·지원, 연계·협력
-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광역 지원 협정
- 각종 미디어와 연계하여 재해시 다국어로 정보전달

○ 기 타

- 보다 전문성이 높은 상담체제를 정비하고 인재를 육성
- 유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공생의 중심인물로 육성

□ 다문화공생의 지역조성

-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계몽
 - 지역 주민·기업 등에 대한 다문화공생 계몽
 - 학교, 도서관, 공민관 등을 다문화 공생의 거점으로 조성
 - 다문화공생을 주제로 한 지역주민과의 교류이벤트 개최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외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인물을 네트워크화하고, 외국인 주민의 자주 조직 등을 지원
 -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지역 시책에 반영시키는 구조 도입
 -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자치회, 상가, PTA 등) 참여 촉진
 - 지역사회에 공헌한외국인 주민 표창제도

- □ 다문화공생의 추진체제 정비
 - 다문화공생 추진 **담당부서 설치** 및 청내의 **횡적제휴**
 - 지역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분담 및 연계 협력
 - 시구정촌은 구역 내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지침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주체로서 대응
 - 도도부현은 시구정촌과 정보공유 및 시구정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촉진하고, 통역 등 전문 인재육성 및 모델사업 등 추진

4 향후 검토과제

- □ 방재네트워크의 정비
 - 이 , 의 행정내부 연계는 물론 국제교류협회, NGO 등 민간단체가 연계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 재해발생시 피해지의 주변지역 블록단위나 전국레벨의 외국인주민에 관계되는 피해구조 네트워크 구축

□ 정보기반정비

- **외국인주민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 재구축
- 각종 미디어와 연계 다양한 언어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체제 정비
 -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필요한재정조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시책의 조사연구
 - **다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공생추진지침·계획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재네트워크**의 구축지워 등

일본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 사례

□ 커뮤니케이션 지원

지방자치단체 정보 프로그램 방송(관서 인터미디어 주식회사

-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13개언어로 방송하는 외국어 방송국을 개국(FM COCOLO)
- 관서의 지방자치단체가'지방정부 정보'를 제목으로 다양한 언어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나가노현)

○ 현의 상담기관(보건소, 아동상담소) 등에 있어서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적 현민의 상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통역이 가능한 시민을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로 등록·파견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에 의한 서비스 추진(시즈오카시)

- 영어·중국어·포루투칼어·한국어 도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도서 및 약 40여 종류의 잡지·신문을 소장
- 지역대학의 학생과 협력하여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 대회 등 이벤트 개최
 - '외국어 정보제공 및 다국어 상담창구 정보제공 네트워크' 운용(아이치현, 군마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나고야시 등)
- 6개 현내의 시정촌 등에서 작성한 다국어 문서를 아이치현에서 웹페이지에 집약 시정촌 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

○ 6개 현내 시정촌 등의 다국어 상담창구를 아이치현이 웹페이지에 집약하여 일본어·영어·포루투칼어 등 3개국어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용

다국어 생활정보센터 설치·운용(가나카와현 국제교류협회

- 지방자치단체와 NGO가 발행하는 다언어 생활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자료의 작성경신 정보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
- 수집한 다언어 생활자료 중 사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IT를 활용, 정보발신

□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국제공생 살롱'에서 일본어학습 지원(현)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외국인아동생도의 일본어학습 지원 생활상담, 각종 이벤트 등 개최

일본어 학습 리소스센터(나가노현)

- 다국적 현민 등의 일본어 및 생활지원에 관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리소스센터를 현내 여러 곳에 개설
- 일본어 자원봉사자 등이 일본어 교재를 활용하면서부교재 또는 보조교재를 작성·분류하고, 교재의 유통방안 등 연구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현)

○ 외국인 주민에 대해 지역생활의 기본적인 정보나 법규를 자국어로 전달하는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현의 위탁 사업으로 국재교류재단이 현내의 시정촌과 연계하여 실시

□ 생활 지원

외국인 거주지원시스템(가나카와현)

- 부동산 업계·단체, 민족단체, 각지역의 국제교류협회 YMCA, 가나카와 외국인 주거 서포터센터 행정(가나카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 관계부문이 외국인 거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주택관계 각종 매뉴얼을 다언어화하고 다국어 상담창구 설치 거주지원제도(가와사키시)
- 외국인 및 고령자장애자 등이 주택을 빌리는 경우, 보증회사의 리스크의 일부를 가와사키시가 부담
- 체납 등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공급회사가 개입하는 '입주보증시스템' 및 문제발생시 가와사키시와 관련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지원하는'거주계속시스템'을 구축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네트워크(아이치현)

- 현의 위탁사업으로 민간법인과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6개 자치회가 연계하여 의견교환모임을 개최
-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

지구별 3자 간담회(군마현)

- 행정담당자, 자치회 직원, 외국인주민의 3자가 지구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지자체 시책, 행사, 자치회 조직, 지역의 법규 등을 익히고 의견교환을 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정착을 촉진

□ 교 육

귀국· 아동학생 학교생활 서포터 사업(오사카)

- 다양한 언어로 학교생활·진로 지도 및 상담회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국어로 정보제공
- 오사카부교육위원회, 관서국제교류단체협의회 각 시정촌의 국제교류협회, NPO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가 사업을 담당

아동 다문화공생센터(효코하마현)

- 모든 아동들이 서로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아동들과 공생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외국인 아동들의 자기실혂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03년 설치
- 교육상담, 학습교재·서적 등 전시·대출, 강사·자원봉사자 등록 등 인재풀의 정비 등을 실시

다문화공생 교육 지원사업(아이치현)

- 현내에 거주하는 외국적 아동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생활환경 개선을 담당할 모델체제 만들기를 목적
- 교육·생활지원 프로젝트사업 및 외국적 아동학생 교류 프로젝트를 민간단체와 외국인학교로부터 공모하여 위탁실시

일본어 초기 지도교실 설치 및 방과후 학습지원사업

- 입국·전입한 외국인 학생주로 브라질인을 대상으로 일본문화와 필요최소한의 일본어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일본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생교실을'03년 개설
- '05년부터는 공민관을 이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원사업을 시의 위탁사업으로 하여'브라질인 그룹에서 실시

□ 노동·환경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홍보(아이치현, 시즈오카현)

- 사회보험사업소에 의뢰하여 시 및 상공회의소 홍보지에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절차 등 홍보
- 시 창구에서 외국인주민의 취로상황재류기간·가족구성 등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하도록 지도

외국인 취로관계 연구회 설치(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이나 지역경제단체관계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외국인 노동에 관한 문제를 협의

□ 의료·보건·복지

외국인 의료서포터 프로그램(현 국제교류재단)

○ 의료통역 자원봉사의 skill up 연수(포루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 의료통역자 파견 파일럿사업 외국인 의료정보의 정비, 건강상담회의 개최 등

의료통역 파견시스템 구축사업(가나카와현)

○ 현내의 협력병원으로부터 의료통역자의 파견을 요청받은 경유 의료통역 코디네이터가 최적의 의료통역 담당자를 파견

의료통역 시스템 모델사업(교토시 국제교류협회)

- 시, 국제교류협회 및 NPO다문화공생센터 등 3자가 공동으로 통역자를 시내 2개병원에 파견 또는 상주
- 병 증세 및 수술, 부작용, 보험 등 사무서류의 설명 등을 중국어와 영어로 대응

의료통역 자원봉사 육성강좌(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 NGO, 현 의료사회사업협회 현, 시 보건소, 시 국제교류협회 등의 협력을 얻어 의료통역 연수를 실시

□ 방 재

재해시 다언어 정보 네트워크 구축(효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

○ 재해시 도움을 주기 위해 다국어로 표기된 시트표를 출판 하고, 재해를 입은 다른 지자체에도 제공

대사관과 연계하여 지진대책 세미나 실시(동경 소방청)

○ 대사관에서 지진대책 세미나 응급구호 훈련, 방화·방재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

□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국제이해교육 보급사업(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 국제이해 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연수회 지구시민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
- 국제이해 강좌에 협력 가능한 외국출신자의 인재풀을 정바운영 지역 국제인재 파견사업(오오사카 국제교류재단)
- 교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NPO와 연계를 도모하고, 국제이해 교육 자원봉사자를 육성
- 지역 외국인학교와 학생교류 가능 자를 등록국제인재로 파견

□ 외국인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다문화공생 심포지움 사업(국제교류센터)

○ 지역의 브라질인 리더를 모집하여 워크숍을 개취 교육·지역참가 등 브라질인 커뮤니티 과제에 대해 논의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리더 육성사업(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연수회 개최 다문화공생 선진지 스터디 투어, 공개강좌 등 개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가와사키시)

- 외국인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96년 조례로 설치
- 일반 공모에 의한 응모자 중에서 선발된 대표자는 테마를 자주적으로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 의회의 제언에 대해서는 청내회의에서 담당부서를 결정하여 대응 외국인 자조조직(브라질 친우회)
- 시 관내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02년 설립
- 브라질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학용품 재활용, 학교생활 설명회, 포루투갈어 교실 등을 운영

2-2.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다양성 내의 통합

Ⅱ 정책 목표(비젼) 및 원칙

□ 정책의 목표(비젼)

- 공동체의 조화를 강화하고 다분화된 호주 사회에 부응할 수있는 정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립하며 문화적 다양성으로 부터 모든 호주인을 위한 경제적 사업적 이익을 촉진
-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사회, 미래의 공유를 통해 통합된 사회, 국가(민주주의 제도 및 가치, 법의 지배원칙에 헌신적인 사회를 추구함

□ 정책의 원칙

- 국민으로서의 책무(Responsibilities of all)
 - 모든 호주인들은 호주 사회의 기본 구조와 원칙을 지탱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니며
 - 이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번창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상호 존중(Respect for each person)

- 법에 근거하여, 호주인들은 자신의 문화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 그에 상응하여 타인들의 그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음

○ 개인에 대한 공정성(Fairness for each person)

- 모든 호주인들은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게 될 것이며
- 사회적 공정성은 인종이나 문화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출신지 등의 배경에 대한 차별 없이 우리가 호주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만듬

○ 모두를 위한 이익(Benefits for all)

- 모든 호주인들은 생산적인 다양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혜택을 받고 있음.
- 중요한 경제적 이익은 인구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므로 다양성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② 다문화 정책의 내용

4

□ 지역사회 통합 : Community Harmony

○ 호주를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월 21일을 '화합의 날(Harmony Day)'로 지정해 모든 호주인들이 다문화주의를 촉진하고 자축하며 아울러 인종차별주의에 저항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주로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1999년에 이러한 활동을 발족시켜 지역 단체 및 학교, 기관에 화합의 날 포스터나 스티커, 리본 등의 물자를 제공하고 있음.
- 공동체간의 조화를 위해 연방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문화 간의 화합과 통합을 잘 이끌어가는 도시를 선정하여 그들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재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예를 들어, 2005년 한 해 호주정부는 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민족 간의 화합을 조성하려는39개 지역 공동체를 선정하여 백 구십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였음
 - 또한 다른 문화 간의 분쟁을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상을 수여 하고 있음
- '화합된 삶(Living in Harmony initiative)을 위한 연간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grant program)'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의 규모는 연간350만 호주달러 정도임.
- 이와 더불어 호주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일년에 한번 각자 특성에 맞는 다문화 축제(Multicultural Festival)를 주최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이 행사는 주로 소수 민족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 공연, 강연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임.

- 호주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 시행
 - 호주의 초, 중, 고등학교는 You + Me = Us(Australia)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세대의 호주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종주의 및 적대, 편견을 일소하고 소수문화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동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 Access and Equity

- 정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호주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현실에 맞게 제공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외 집단 특히 이민 및 난민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이 호주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착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s)'을 수행 중임.
- 1998년 제정된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서비스 헌장 (Charter of Public Service in a Culturally Diverse Society)'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가 모든 호주인들에게 언어와 문화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 헌장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본소양 고객대응방법, 훈련, 정보축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실천을 위한 지침서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 이민자들의 언어 및 문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온라인 및 전화서비스를 통해 다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의 주요 정책 및 행정 서비스 등도 다국어 온라인 서비스나 책자를 통해 안내되는데 특히 사회 복지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됨.

-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웹사이트는 각종 질병과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50여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고 있음(NSW Health, 2005)
-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호주 정부는 매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민자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3만 호주달러를 보조
 - 성인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타 및 개별 직장을 통해 부가적 재정지원
 - 지역의 공공 박물관 및 도서관에 다문화권의 도서 및 문화 관련 자료, 물품 등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지원(DIMA, 2005)
- 호주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방송 미디어의 역할
 - 공중파 텔레비전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일면을 가장 잘 반영한 방송사임
 - SBS는 60개가 넘는 언어로 텔레비전 및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고, 6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음
 - 방송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려는 호주정부가 재정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Productive Diversity

○ 호주의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The Productive Diversity program)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이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자본화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고 있음.

- 다문화주의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자체가 호주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다문화주의가 사고의 다양성 혁신 창의성을 유도하는 요소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되고 있음
- 민간 부문과 공동체 조직들과 함께하는 생산적 다양성 및 하모니 데이 파트너십 프로그램(the Productive Diversity and Harmony Day partnerships program)은 수상의 기업공동체 파트너십 구상(Business Community Partnership initiative)의 실행에 효율적인 기여를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접근성 및 형평성 전략과 생산적 다양성 전략을 통합하는데 헌신하고 있음

③ 정책적 시사점

□ 각 정부간의 강한 협력 체계

- 다문화정책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통합정착전략(the National Integrated Settlement Strategy, NISS)을 제정함.
- NISS 제정 과정에 주 및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 주 및 지방 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함
-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수평적 정부간 협력이 활발함

□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Partnership)

-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다문화정책 사업에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 '화합의 날(Harmony Day)'행사, 지방의 각종 다문화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사업의 주체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며정부는 재정적 지원, 조언 및 인센티브 제공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기금(fund) 조성의 활성화

- 연방 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다문화 정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는 기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민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 있음

□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및 지역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 또는 통역되고 있어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

○ 연방 정부는 '다문화의 호주, 2003-2006' 정책을 통해 집단간 조화 전략과 접근성 및 형평성 전략을 생산적 다양성 전략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주 및 지방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다문화정책 사업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다문화주의가 호주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호주인들이 다양한 다문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문화주의에 대한 성숙된 시민인식

- 호주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민사회로, 호주 시민들은 다문화정책을 호주의 미래 번영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여기고 있음.
- 호주인들의 이러한 인식 수준은 다문화 정책에 자발적 능동적 참여를 강화시키고 있음

호주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 사례

□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Harmony

종교 단체간 조화 사업(Inter-faith Harmony Project): Canterbury City Council, NSW

○ 목 적(goal)

- 이 사업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 단체들의 집단 토론을 촉진 시키고 종교적 인종적 집단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함
- 이를 통해 분열 보다는 단결의 요소로서 신앙의 개념을 탐구하고 종교적 단체 및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 법(how)

- 단결의 힘으로서 신앙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일련의 신앙종교 집단간 모임을 개최
- 종교 단체간 연락 및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종교 지도자 모임(두달에 한번씩), 학교와 일반 공중을 위한 종교 유적지 및 관광지 여행 고등학교의 신앙 단체간 토론 그룹, 그리고 온라인 및 방송 출판 캠패인 등이 있음

○ 기대 효과

- 이 사업을 통해 지방 정부는 공동체내 긍정적인 관계들을 촉진시켜 왔으며, 집단간 조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 시켰으며, 종교적 편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왔음
- 이 사업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보조금 사업he Living in Harmony Community grants program)'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국제 체육대회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주말 행사 (International Cup and Cultural Exchange Weekend): Gunnedah Shire Council, NSW

○ 목적

- 문화 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 농촌-도시간 분열에 화합의 다리 놓기
- 조화를 촉진하기

○ 방법

- 다양한 문화 세계에서 온 150명의 시드니 주변 거주자에게(주로 피난민의 배경을 지닌자들) 스포츠와 문화 교류의 주말을 위해 오지로 들어 갈 기회를 제공
- 주말 활동에는 축구 토너먼트 박물관 관람, 양털 깎기, 코알라 보호구역 방문 지역 전통 문화 체험 그리고 서비스 클럽에서 지역 파티 참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대 효과

- 이 사업은 정부기관들, 단체들, 시민들이 피난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호주 전통의 좋은 친절'을 경험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중.
- 동시에 Gunnedah 거주민들은 다양한 문화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동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 Access & Equity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여성의 리더십 프로젝트 2004-2005 : Bankstown City Council, NSW

○ 목적

- 지역사회 내 리더십 및 의사 결정 역할에 있어서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Culturally & linguistically Diverse) 여성들의 역할 강화

○ 방법

- 정규훈련과정
- 지역 리더들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초청 강사 프로그램
-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주요 실적

- Women Speak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뱅크스타운시 및 다른 두 지역 의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주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됨.
- 지역사회의 리더로 새롭게 부상하는3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참여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대표성에 있어서 자신감지식, 숙련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 Women Speak 프로젝트는 2005년 '전국지방정부시상식(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에서 여성 참여 증대 부문(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을 수상하였음.

'지방 정부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 City of Holroyd, NSW ○ 목적

- 정부의 체계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
- 이것은 지방정부와 지역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간 원활한 정보 이동을 위한 통로를 개발함

○ 방법

- 선정된 정부기관과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적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지며,
- 이 프로그램은 대상 집단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지며 3 4주 이상 지정된 날에 2시간동안 교육이 진행됨.
- 각 지방 정부부서는 자신의 역할 책임, 서비스 그리고 기능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참석자들에 의한 역할연기와 질문 시간도 제공됨
-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매체들의 방송은 이 이벤트를 촉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참가자들은 시장(the mayor)으로부터 참석 증명서를 수여 받으며, 참석자, 공무원, 발표자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환류가 제공되고 있음

정부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Interagency Project): Clarence Valley Council, NSW

O 목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추진 배경

- Clarence Valley의 문화적 다양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요 정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를 서비스 전달에 있어 주변 영역으로 생각함
- 또한 이주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방법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임
- 이에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서 온 주민들은 이 농촌 지역에서 특히 소외감, 가족, 문화, 지원으로부터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

○ 방법

- 문화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간 협력(inter-agency)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 포럼 개최

번역 및 통역 서비스: Northern Territory

- 이 서비스는 Northern Territory 전역을 걸쳐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며, 이민자들이 Northern Territory 정부 서비스에 접속할 때 무료로 제공됨
- 2003-2004년에 이 서비스는 4,681건의 언어 서비스 (온라인 통역: 3,833건, 온라인 번역: 848건)를 정부와 비정부기관 개인 그리고 기업체에 제공하였음 (www.multicultural.nt.gov.au)

공동체에 대한 자문 : City of Melbourne

- 시는 다양한 공동체 기관, 자문 기관 그리고 공동체의 회원들과 함께 시의 2004 다문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했음.
- 멜버른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인종적 방송 매체와 지역 신문사로 광고를 통해 또는 9개의 언어로 번역된 우편 이메일,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함.(www.melbourne.vic.gov.au)

□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사례

음식 축제(Bites Food Festival 2005): Bankstown city council, NSW

○ 목적

- 뱅크스타운의 다양한 지역사회 이점을 음식 페스티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개
- 인근 지역으로 부터의 관광객 유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방법

- 음식 투어(food tours)
- '뱅크스타운 음식 및 식당 가이므 출시
-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 개최

○ 주요 내용

- 아시아 요리 투어, 유럽 음식 투어, 아시아 식당 투어, 작은 레바논 투어, 감질나는 차 문화 투어 등의 음식 투어를 개최함
- 각 투어는 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으며이를 통해 뱅크스타운시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푸드 페스티벌은 다문화주의로부터 이익을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사례로서 지역사업 분야에 큰 이익을 제공함.

% 7,000

식품안전훈련(Getting fresh): Fairfield City Council, NSW

○ 목적

- 공공보건 개선
- 지방 기업들의 표준보건규약의 준수 확보
- 지방의 문화적 다양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증가

○ 방법

- 식품 처리자에게 다양한 언어로 무료 훈련 세미나 제공
- 참가자에게 영업소 창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자격증 및 'getting fresh' 스티커와 훈련 자료 매뉴얼을 제공
-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신선하며 다양한 음식들을 공급하는데 있어 시장의 실질적인 성공을 유인

○ 추진배경

- Fairfield City는 시드니에서 세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정부로 주민들의 반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났으며그들 중 거의 95%가 비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음
- 이 지역은 호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수와 비율(66%)이 가장 높으며,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비율도 가장 높음.
- 이러한 다양성의 결과로, 이 지역은 또한 가장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지게 됨

○ 기대효과

- the Getting fresh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30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관련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거래당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지식과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있음.

'직원들의 기술 이용' 프로그램 : 호주의 무역 위원회(Trade Commission)

- 호주무역위원회 소속 노동력의50%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2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
- 또한 호주에 기반하고 있는 이 위원회의 많은 지위들에 비영어권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기술이 요구됨
- 이 위원회는 2개 국어 사용 근로자들이 그들의 언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名www.austrade.gov.au)

2-3. 독일의 이주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1 개 요

- 독일에는 전체 인구의 8% 정도의 이주 외국인들이 거주
- 최근 이민국으로 전환하고 속지주의를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
 - 이전에는 이주 외국인들은 언젠가는 독일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이주 외국인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음
- 2005년 개정 이주법에 따라 이주 및 난민의 문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괄하는 이주난민연방청을 설치

2 통합프로그램 수행체계

□ 법적 근거

○ 이주법

- 외국인의 독일 유입의 조종과 제한을 위한 법적 틀
- 이를 통해 독일의 수용 및 통합능력과 경제적 노동시장 정치적 이해에 대한 고려 하에서 이주를 통제
- 이주민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통합프로그램규정**(Integrationskursverordnung: IntV)
 - 통합프로그램의 개별사항 특히 기본구조, 기간, 학습내용 및 행정과정 등을 포괄
 - 프로그램의 실질적 실시는 이주난민연방청의 관리하에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

[담당기	구

- 총괄 : 이주난민연방청(BMI, Bundesamt t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
 - 2005.1.1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주법Zuwanderungsgesetz)에 따라 독일로의 이주 외국인들의 언어 및 사회적 통합을 총괄
 - 이주상담기관 개설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젝투나아가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
- 통합업무의 구체적인 집행은23개 지역사무소에서 이루어짐.

③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기본방향

- 이주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무조건적인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 독일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기본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생활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
- 사회통합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언어 교육과 다양한 통합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
- □ 이주 외국인의 상담
 - 초기상담
 - 이주난민연방청이 이주 초기상담 실시를 책임

Spitzenverbaende der FreienWohlfahrtpflege()

- 일정한 기간내에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른 개별 상담을 통해 향후 그에 맞는 다른 통합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전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
- 각 주마다 처음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기초상담실을 운영
- 가족·노인·여성실을

- 매년 선정된 프로젝트는Clearingstelle가 조정·구조화
 - Clearingstelle는 수많은 기관 또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 상담과 공동체 통합프로그램 전체를 조정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수행
 - Clearstelle에 Profi-Datenbank 라는 프로젝트 진흥을 위한 정보체계를 도입하여 각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공동체 지향적 통합프로젝트 내용(2004년)

- **부부참여 프로젝트** : 주로 재외 동포 이주민들을 대상
- 모델 프로젝트 : 노동사무소에서 지원되지 않는 직장 통합 교육 프로그램, 알코올/ 약물/ 범죄 예방 프로그램,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에서의 활동 지원 등
- 동서 통합 프로젝트
- 운동을 통한 프로젝트 : 언어 장벽과 문화 편견 해소, 폭력 예방, 이주자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 수용능력 향상, 스포츠단체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림	VI	

1.	'06년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세부지침((*06.8)
----	------	-----	-------	------	-------	---------

① 지방자치단체 추진체제 구축
□ 지자체별 외국인 시책 자문기구 구성
○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을 통해 시정에 반영, 관계기관민간기구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O 교육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시민단체·외국인 등 참여
* '○○
□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 시·도 및 시·군·구 전담기구·인력 확보, 읍면동별 외국인 민원 등 담당자 지정
※
○ 거주외국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07 ()

② 거주 외국인 지원기반 마련
□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 외국인 지원기구 구성,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복지지원, 민원상담 , 문화행사 개최 등을 포괄
O『외국인의 날』운영, 외국인 표창, 명예시민증 수여 등 규정
* (*06.10)
□ 지역단위 (가칭)「국제센터」설치 운영 지원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내 모든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안내공간 마련
○ 내·외국인이 지자체 생활정보는 물론 외국의 정보를 상호교환 하고, 상담 및 한국어 등 교육 등 다문화교육 시설로도 활용 ※ ', '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 정기적으로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 실시(매년) ※ ·
O 읍면동 복지요원, 보건지소 등을 활용, 생활실태 수시파악
□ 소요재원 확보
○ 시·도 및 시·군·구별 '07년 예산 자체 확보
* '07

③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지역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 한글, 실생활 회화 등 수준별 한국어 교육 강화
*
г _
-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초생활 적응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기계 조작 등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상담소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교육기관 지정
* , , , ,
O 외국인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 자발적 귀환(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동화(결혼이민자) 등
□ 민원 등 상담
○ 생활·법률상담, 고충상담·처리(임금체불, 성·가정폭력 포함),
취업상담, 일반민원 처리
※ ()
○ 상담업무 매뉴얼 제작, 상담사례 활용 교육 및 workshop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공
○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 풀(pool)의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축

- □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제공
 - 공공부문에 외국인 인력 활용
 - 국제행사안내, 다문화교육 강사, 외국인 상담, 외국어 교사 등
 -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우대시책 확대 적용
 - 출산장려금 지급, 농가도우미 파견,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 O 외국인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 지자체 공영주택 입주자격 선별적 부여, 도서관 등 공공시설 자유이용, 시설내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개설
 - 외국인을 위한 중고가구거래 등 '**알뜰장터**' 정기적 개설
 - 다국어로 생활정보 제공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반회보 등 외국어로 제작 배포
 - 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소책자, 팜플릿 활용) ※ (), , , ,

□ 응급 구호체계 확립

- 응급시 활용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확대 구축,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소방안전점검 강화
- O 갑작스런 소득 중단시 생계비, 질병·부상시 의료비 지원 검토
- **재해시** 거주외국인 지원대책 강구 ※
- O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등

④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조성

- □ 공무원 및 지역주민 교육 홍보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다문화 관련 교과** 반영, 직장교육 등 활용
 - O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 민방위교육, **문화강좌** 등에 다문화 강의 및 홍보물 상영
 - O 다양한 매체를 활용, 외국인 지원 시책 및 프로그램 등 홍보
- □ 민관협력 기반 조성
 -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 ·
 -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숙자 쉼터 등 민간단체 지원 ※ · '
- □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O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 운영
 - 주민·기업체·등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외국인의 날 행사 등)
 - 외국인과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마을청소 등 **공동활동** 유도 *
 - O 유적지 답사, 전통음식 만들기 등 한국 문화체험 활성화
 -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 마을·거리 조성, 각국 기념일 고유행사 개최 지원 등 외국인 자국민 모임과 문화 육성

2.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 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 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1. 외국인
-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2.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 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 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중앙부처 외국인 업무 현황

Ē	L ţ	1	실과명	내	8	전화번호	홈페이지
재 경	제	정부	외환제도 혁 신 팀 경 협 총 괄 팀	투자 동향, 통계관	권해석, 외국인 증권 리 인 투자 조세 감면	02) 2150-2547 02) 2150-2623	www.mofe.go.kr
	육 인 원		재외동포 교 육 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자녀교육 지 초중등학교 학생복	1원 업무	02) 2100-6574 02) 2100-6345	www.moe.go.kr
외 통	상		재외동포 정책 1과	책실무위원회 운영 외국인 입국사증 [발급(재외공관)	02) 2100-7570	www.mofat.go.kr
			국 적 난 민 과	국적취득에 관한시 국적상실 및 이탈역 이중국적자의 관리 기타 국적민원에 된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불인정 및 난역 이의신청에 관한 / 난민여행증명서 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관련단체와의 합	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불인정 민인정 취소에 대한 사항 :급에 관한 사항 UNHCR) 등 국제기구	031) 478-5027	
법	무	부	체 류정 책 과	재입국허가에 관한 외국인등록에 관한 투자외국인의 체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출입국에 관한 사 발급에 관한 사항	원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체류허가 시항 는 사항 -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국인에 대한 통계 작성 -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실증명 등 제증명의	02) 2100-3445	www.moj.go.kr
			외국국적 동 포 과	대한 정책 수립 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⁷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내 체류실태 조사	031) 478-5043	

구	L ,	분	실:	과명	내 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 집	시 고		02)	
법	무	뿌		입 코	기원에 관한 사항	031) 478-5065	www.moj.go.kr
행 자	치		주 제 .		그 시사제 거주입구의 영문 주시제제 구주	02) 2100-3995	www.mogaha .go.kr

구	<u> </u>	분	실과명	병	내 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관 산 업	광 팀	외국인의 국내관광 투자유치 촉진, 지자체 외자유치 지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도 감독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등 관할	02) 3704-9750	
관	광	화부	국제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와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어울림 마당 등 개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02) 3704-9570	www.mct.go.kr
농	림	부	여 정 책	성 과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02) 500-1609	www.maf.go.kr
산 자	원	업 부		자 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정책 외국인 투자 신고 수리, 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 담당 외국 기업의 날 행사 추진		www.mocie.go.kr
보복	지	건 부	정 책	험 팀 공 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02) 2110-6348 031) 440-9132	www.mohw.go.kr
노	동	부	외국인 고 용	력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및 외 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 및 지도 관리 업무 수행 송출국가의 선정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고용허가서 발급 고충상담, 언어지원, 출국지원 등 사후 관리적 업무 수행		www.molab.go.kr
여 가	족	성부	기획	족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업무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 운영 피해여성을 위한 1366 긴급전화에 동시 통역 시스템 도입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02) 2100-6865 02) 2100-6784	www.mogef.go.kr
국	세	청	법	인 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 감면 업무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세원 관리	02)	www.nts.go.kr

4. 각 국의 외국인 업무 현황

구	분	관련법	담당부처	주요내용	비고
독	일	-이민법 -외국인법 -난민신청 절차법 -반차별대우법 -독일기본법 -국적법		-외국인, 난민, 재회동포귀환, 이민, 국적 분야에 대한 책임기관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과 난민 문제 등을 다루는 주무부처 ※ 외국인 노동자 가족초대,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관장영역 확대 -이주운영위원회 운영: 이주행정의 장기 발전 계획과 새로운 이주정책 수립	
				-재외동포 귀환이민 수용, 유태인 이민의 분배, 귀화등 외국인 통합과 관련된 사업 지원과제 수행 -산하 기관인 '외국인중앙등록소'에서 외국인 현황등통계 작업 실시	
			(Bundesamt fur Migration and Fluchtlinge)	-주로 이민과 난민업무 수행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관계 조정 -수요에 입각한 노동시장 정책수행과 상이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장기적인 이민정책 계획 -유입인구의 언어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수행 ※ 독일 거주 외국인의 고충상담,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보 제공업무 등 수행	
				-주정부 내무부: 외국인법 집행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도 감독 -주정부 외국인국 : 외국인법과 기타 외국인 관련 법률 규정 집행의 전반적 책임기관	
				-외국인 통합정책 수행 및 사회보장 정책 관장 -연방, 주정부 및 시의 행정부에는 외국인들의 동화정책을 위한 부처가 존재하며, 이민자들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홍보활동	

구분	관련법	담당부처	주요내용	비고
호 주	· 이민법	이민 및 다문화부	-이민과 다문화정책 관장(Living in Harmony, Harmony Day 등 국가적 행사)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헌장(다문화정책에 심혈)	
캐나디		of Canadian Heritage)내 이민부와 시민권부	-이민관련 업무(이주법 집행과 난민 보호, 이주자의 사회적응 및 통합 등을 총괄) -연방과 지방정부의 이주법 집행 분담 -캐나다 정체성 행정 다문화주의적 정책입안문화적, 인종적, 윤리적 다양성을 반영) -다문화적 문제들을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서비 스를 기획 -외국인 참여, 인종차별방지, 문화적 다양성 반영, 언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방과 연계해 정책 입안 온타리오 주: 캐나다 다국민의 역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실시 '민족언어학습프로그램': 공립학교에서 44개의 비공용어를 의무교육 '캐나다의 다문화유산' 명칭의 역사교육의무화	
미국	이민법	-국토안보부내 이민행정국 (USCIS)-구) -법무성(DOJ)	-대테러, 세관과 이민업무 등 -외국인의 사회통합 -미국 내 체류자들의 정보 등록(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노동부의 고용기준기관(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ESA)과 이민국 간 양자가 합의협정 (MOU)를 맺어 비정규 이주자의 고용에 대한 정보공유 약속	-

구분	관련법	담당부처	주요내용	비고
<u>이탈</u>	-이민과 망명법	내무부	-출입국관리정책+이민자에 대한 사회정책 포괄관리	
' <u>=</u> 리아	(Martelli)		-국가적 외국인(이민자) 수용 원칙 마련(영주권 획득 등)	
	(la legge TURCO		-지방정부에 외국인(이민자) 정책집행	
	-Napolitano)		-외국인 공동체 성장 촉진	
	(la legge Bossi-Fini)		-로마에 전국 이민회의조직	
	-외국인의 입국과		-통계청의 외국인 이민 상황통계	
	거주에 관한 법률		-외국인(이민자) 범죄통제	
	= = = =		-정치적 망명자의 권리나 종교인문제	
	(Act 40)		-지방의 외국인 수용 기관설립 기금조성	
	-외국인 법		-외국인에 사회보장권리(의료보장, 이민자 영주캠프 등)	
	(Aliens Act)		국가망명프로그램설립	
 영국	구전이 <u>미</u> 만명번	내무부 이민과 국정국	-난민자 관리 -추방 및 행정적 퇴거를 담당	
			-외국인 정책관련 민원의 one-stop 서비스 실시	
	migration and A		-재통합프로그램(Voluntary Assited Return and Rei	
			ntegration Programme) : 정착지원금제공 등	
	sylum Act)		-인종차별방지법령강화와 공공기관의 인종차별보호	
			권한과 의무 확대	
			-공직임용에서 차별방지	
			-불법적인 이민자와 망명자 지문의 중앙 database화	
	.11 .11		-특정지역집중방지위한 'no choice'원칙 실시	
1	이민법	내 각에 이주민부 (지원 조정실, 기획연구실,	-이주민 동화 적응정책수립(소수민족, 외국인 2세	
라엘		(시천 소 8 로 기록한 1 로, 주거지원과, 고용지원과,	교육 등) -정착총괄지원(의식주, 문화, 고용, 교육, 커뮤니티지원	
		사외국시작, 등외국선작,	등 국가 전체적 규칙제도 기획, 연구)	
		히브리어교육과 등	-이주민들의 중류사회 편입정책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조정	
			-이주민을 위한 규칙, 제도, 예산	
스위	-이민법	연방법무 경찰부 소속		
스	-난민법	연방이민청(BFM)	-연방정부차원의 이민자의 현지사회 융화지원(재정	
	-외국인 정주법		지원포함)	
		(연방의회자문기구)	-이민자 통합위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제공(특히 무료	
		((((((((((((((((((((언어 연수)	
			-4개 국어인정(독, 프, 이탈리아, 로망쉬어) -스위스 내 모든 외국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장	
			-모든 주정부와 시 단위별로 이민자 융화지원단을	
			임명	
프랑	외국인의 입국과	내무부, 사회부, 노동	-이민자의 유입조건과 통합에 중심	
스	거주에 대한 법	부, 연금부, 사회복지	-외국인 자녀의 학교교육이 핵심	
		부에 각각 이민자 담	-'지방발전과 이주' 프로그램 시행	
		당 부서, 내무부 산하	-'국제적인 이민과 공동발전을 위한 관련부처 상호대	
		의 경찰로 국경경찰 (bo	표자'들에 의해 감독되는 공동개발정책 시행	
		arder police) 등 여러 부	-이민자들의 본국과 적극적 공동협력증진	
		처가 동시에 관여		
		처가 동시에 관여		

5. 외국인 권리 의무 등 관계 법령(발췌)

헌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 부자복지법

①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 (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③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 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6.1.1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제13조의5 (주민소송)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5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所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7 지방세법

제173조 (납세의무자)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대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⑧ 출입국관리법

- 제31조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본조신설 2002.12.5]

9 국적법

-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3. 품행이 단정할 것
 -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10 민법

제18조 (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Ⅲ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2.3.25]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생략

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i>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30>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9조 (근로계약) 사용자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2.30>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2.30>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30>

제14조 (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 (귀국비용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푺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본조신설 2005.12.23]

14 모 부자복지법

-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본조신설 2006.12.28]
- 제12조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 4. 아동양육비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2006.12.28>

-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2. 아동교육비
 - 3. 의료비
 - 4. 주택자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김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12.28>

6.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1. (A - 1)	,	
2 (A - 2)		
3 (A - 3)		
4. (B - 1)		
5. (B - 2)		
6. (C - 1) 7.		90
7. (C - 2)	· · · · · · · · · · · · · · · · · · ·	90
8. (C - 3)	, , , , , , , ,	90
9. (C - 4)	, , , , ,	90
10. (D - 1)		2
11. (D - 2)		2
12. (D - 3)		24 2 1 1 3 : 2 24 2 1 4 : 1
13. (D - 4)	(D- 2) (D- 3)	2
14. (D - 5)	, ,	2
15. (D - 6)		2

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16. (D - 7)	. , , 1 , , , (D- 8)	2
17. (D - 8)	[5
18. (D - 9)	, , , , (D- 8)	2
19. (E - 1)		2
20. (E - 2)	,	1
21. (E - 3)	(E- 1)	2
22. (E - 4)		2
23. (E - 5)	, , , (E- 1)	2
24. (E - 6)	, , , .	1
25. (E - 7)		2
25 2 (E - 8)		2
25 3 (E - 9)	[1
25 4 (E - 10)	3 1 · 2 25 1 6 3 5	1

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26. (F - 1)	. , , , , , , , , , , , , , , , , , , ,	2
27. (F - 2)	. (F- 5) . 50 . (D- 8) 3 . (F- 5) . [] . (A- 1) (A- 3)	3
28. (F - 3)	(D- 1) (E- 7) 20 (D- 3)	
28 2 (F - 4)	2 2 (23 3)	2

체류 자격 (기 호)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46 1

. 200

. 50

5

(D-8) 3

3

28 3. (F - 5)

7.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전 화	주 소
	서 울 지	역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2-849-6622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603-26 http://www.migrantok.org/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02-747-6830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http://www.jcmk.org/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02-2263-051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빌딩 704호 http://www.mumk.org/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02-2262-7974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47-22 http://www.smwc.or.kr/
갈릴리교회외국인노동상담소	02-859-9135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267 imj@c3tv.co.kr
남부교회	02-745-1903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17-4 ifather@hanmail.net
동북아선교교회	02-830-1068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805-2호 3층
동안교회	02-962-178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346-99 http://www.dongan.org/
라파엘클리닉	02-763-7595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의대본관1층 106 http://www.raphael.or.kr/
명성교회	02-3427-036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http://www.msch.or.kr/
새문안교회(해외선교부)	02-733-8143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 http://www.saemoonan.org/
서울외국인교회	02-848-264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5-14 syoyun@kornet.net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의집	02-423-066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0-13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02-458-2981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8-8 smmc@chollian.net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130-102 http://ijunodong.prok.org/
서울조선족교회	02-857-7257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98-15 chosunjock@hanmail.net
선한이웃클리닉(경동교회)	02-2274-016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26-6 http://mclinic.net/
신성교회	02-986-1235	서울시 강북구 미아5동 458-8 jesuspia@shin-sung.or.kr
양문교회	02-902-2611	서울시 도봉구 쌍문4동 218
엘림미션센타	02-796-017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2-1
온누리미션	02-796-605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http://www.onnurimission.com/

단 체 명	전 화	주 소
왕성외국인교회	02-888-4813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wangsung@wangsung.or.kr
왕십리교회	02-2229-541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1동 773 http://www.wanggam.org/
중국동포의집(서울)	02-863-6622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 http://www.g4w.net/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02-795-5504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02-2699-9943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52-46
은혜교회 하비루선교회	02-915-9262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8-212
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90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68(4층) http://www.wmigrant.org/
용산나눔의집	02-718-998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17 http://www.ysnanum.or.kr/
정동아가페클리닉	02-753-0001	서울시 중구 정동34번지정동제일교회 http://chungdongclinic.onmam.com/
우즈백노동사회복지부 한국사무소	02-2675-623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55-7호 에이테크노타워 808호
인터내셔널에이드코리아	02-543-727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9 현대리버스텔 201호
작은손길	02-924-1010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2가성균빌딩3층 http://www.littlehands.or.kr/
장충교회	02-2279-933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115-1 http://www.jangchung.net/
재건서울교회	02-763-3679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40-243 aiyesu@hanmail.net
조선족복지선교센터	02-723-4823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37-16 2층 welfare@hmjmail.or.kr
청주필리핀교회	02-3472-3952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3
충현교회	02-552-8200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65-1 gwwj@unitel.co.kr
평화의집	02-997-623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5-23 2층
피남처/자유터학교	02-211-411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81-26(201) http://pnan.org/
희년선교회	02-858-7829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2-10호 대명빌딩 3층 http://www.jubileekorea.org/

단 체 명	전 화	주 소
	경 기 지	역
게르방교회	031-921-69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12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031-921-50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20B(1층) tojungee@chollian.net
아시아의친구들	031-921-788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58-4 http://www.foa2002.or.kr/
한길교회	02-381-4979	경기도 고양시 오금동 산144 http://hangil.wwww.to/
일산외국인교회	031-905-829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911-2 zeza@intizen.com
일산조선족복지선교센터	031-975-504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 637-66반석빌딩3층
중국선교교회	031-966-28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3-14
중산교회외국인선교회	031-976-284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1588-7
시화일꾼의집	031-497-715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3번지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031-431-013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9-6 길재빌딩 5층 http://shv1365.org/
공단선교센터	031-432-2845	경기도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라211호
파로스선교회	031-319-172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3 http://www.pharos1004.org/
외국인근로자교회	031-319-172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3 상록빌딩4층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031-258-16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86-2 2층
엠마우스	031-257-85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http://www.emmauskorea.org/
중국동포의집(발안)	031-354-733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35-1 회춘빌딩 3층
피플스하우스	031-354-005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03-5 http://www.thepeoples.org/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032-654-0664	부천시 원미구 중2동1093-1 근로자종합복지회관3층 http://www.bmwh.or.kr/
천산중앙교회	032-672-6603	경기도 부천시 어정구 내동9-1 thebell@netian.com
천구교의정부외국인 노동자상담소	031-878-692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83-6 녹양동천주교회
안양이주노동자의집	031-443-2876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676-136 안양전진상복지관내 http://www.amwc.org/
새중앙교회	031-425-30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58 http://www.sja.or.kr/

단 체 명	전 화	주 소
희망선교회	031-425-104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79 http://www.elpis21.org/
송우리문화센터	031-543-9201	경기도 포천시 소폴읍 송우리 143-8 http://bangla.co.kr/
사랑의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031-874-300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101-3 fwmc@unitel.co.kr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031-848-0266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23-1 smonaco@ chollian.net
암마외국인선교회	031-541-655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9 kgloria@netian.com
여성교호이주노동자여성센터	031-59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94-16 2층 wowc@chollian.net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02-443-1468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읍 노천2리 488-123 3층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031-594-582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촌2리 산33-9 tojungee@chollian.net
옹정교회	031-987-703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7-3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031-997-2301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1-9번지
김포외국인근로자의집	031-981-7795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21-3 mark1@chollian.net
중국동포의집(성남)	031-756-2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나그네사랑공동체	02-443-1468	경기도 성남시 사서53 bokmin42@ kornet.net
중국동포의집(광주)	031-768-5511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71 3층
오포외국인교회	031-718-6119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헌리 362-17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031-768-5511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71
선교교회	031-767-8118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01-32 http://www.lemc.or.kr/
중국동포의집(양주)	031-837-441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40-7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031-618-0965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633-3 http://www.wooricenter.org/
포천나눔의집 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1-532-2025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23-1
하남외국인노동자의집	031-795-899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12-20 2층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031-339-9133	경기도 용인시마평동736보광빌딩 4층 migrant.clckorea.net/

단 체 명	전 화	주 소
	인 천 지	역
공촌외국인사랑방	032-561-3349	인천시 서구 공촌동 산29-1 kongchon@chollian.net
인천기독교노동상담소 (고백교회)	032-573-6295	인천시 서구 석남동 477-13
부개동교회(외국인선교부)	032-503-974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257-6
부평동부교회	032-503-9211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47-5 http://www.dbchurch.net/
선린감리교회	032-428-311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20
산정현교회	032-867-1657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8-142 우정빌딩 B2
숭의교회외국인근로자선교회	032-887-5800	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3-7 graceonly@hanmail.net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872-3612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12통 7반
주안장로교회	032-429-7071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74-1 http://www.juan.or.kr/
엘림해외선교회	032-773-9182	인천시 중구 사동 34-17 http://www.efm.or.kr/
인천카톨릭외국인 노동자상담소	032-765-109	인천시 중구 답동 34
인천남동공단중국교회	032-815-1751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2 62블럭D-7
인천외국인교회	032-542-2950	인천시 계양구 작전3동 164-14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766-4484	인천시 동구 화수2동 35-47
	광 주 지] 역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062-971-0078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16-11 md0078@ hanmail.net
외국인근로자선교회	062-951-7993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0-81 kafw@netgo.com
	대 구 지	역
대구남산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053-253-8490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41-2 ns@namsan.org
대구서부교회 (베트남근로자모임)	053-252-2205	대구시 남산4동 2951-1 meetjoo@ orgio.net
대구시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3-256-0696	대구시 중구 남산4동 2635-5 구민교회 tcao@chollian.net
대구카톨릭근로자회관	053-253-1313	대구시 중구 종로2가 35

단 체 명	전 화	주 소
빛세계선교회	053-746-0386	대구시 수정구 만수3동 854-3 http://www.lwmkorea.org/
대전빈들교회	042-621-8810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1-43
대전외국인이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42-631-6242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6-2 http://www.djmc.org/
	부 산 지	역
카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051-807-6403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서면성당 내
구포제일교회 한국어학교	051-331-6781	부산시 북구 구포1동 구포제일교회
부산신평로교회	051-206-6001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18 http://evandis.org/index_1.php/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051-522-0497	부산시금정구금사동117-14/2석 대중앙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위한모임	051-802-3438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9 유산빌딩 4층 http://fwr.jinbo.net/
부산카톨릭노동자상담소	051-807-6403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서면성당 내
	전 북 지	역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063-272-27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40-2 http://www.jeonjulife.org/
전주안디옥교회	063-274-32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http://www.antiochia.org/
전북외국인근로자센터	063-282-111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4가 80-1
	충 남 지	역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541-9112	충남 아산시 온천2동 481신우회관3층 http://asm.nodong.net/
천안임마누엘선교회	041-565-5801	충남 천안시 신부동 812신부빌딩 6층
천안장로교회(안디옥미션)	041-555-5100	충남 천안시 원성2동 224-7 capcmission@hanmail.net
	충 북 지	역
진천외국인형제의집	043-534-6251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key100@ shinbiro.com
충북외국인노동자자원상담소	043-215-625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413-2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2-252-625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32-5

단 체 명	전 화	주 소
	경 남 지	ঞ্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5-277-8779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 3층 http://www.mworker.or.kr/
마산재건교회	055-248-5156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449-1 http://msjaegun.or.kr/
섬김의교회양산한글학교	055-381-1112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59
창원카톨릭사회교육회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51-82-3737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합덕순복음교회	041-362-4929	경남 당진군 합덕읍 교동리 260-7
	경 북 지	मु
경산벧엘외국인근로자교회	053-853-9888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1리 434-1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053-815-7842	경북 경산시 삼남동 3-1 bokmin42@ kornet.net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054-452-2314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산24-1
	강 원 지	역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033-764-3220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16
	제 주 지	역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064-712-1141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05-4 http://www.fwcj.net/

8.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현황

(단위 : 명) '06.4월 현재

ון פונ	주민등록인구 /'아되는	임구		거주외국인	[총괄(B)		수민등록	- ਲ	외국인근로자	4	Ů.	적취득자	Ċ	'"	국제결혼	01平八	
- H	(A)	N N	严		مخ	ਲ	- <u>a</u>	严	مخ	ਲ	严	مخ	ਲ	严	مخ	ਲ	자녀
兲	48,78	48,782,274	536,627	贈	306,067	230,560	1.1%	255,314	171,201	84,113	39,525	8,431	31,094	90,489	9,835	55,408	25,246
서울특별	AI 10,167,344	7,344	148,966	27.8%	69,915	79,051	1.5%	40,025	18,097	21,928	13,810	3,492	10,318	19,848	2,719	12,255	4,874
ιΉ ΠΗ	구 16	169,315	5,137	1.0%	2,221	2,916	3.0%	1,784	1,013	771	458	66	326	324	23	246	55
КЮ	7 13(130,027	4,917	%6:0	2,321	2,596	3.8%	323	135	188	182	73	109	524	113	397	14
89 각	구 23(230,260	14,803	2.8%	7,543	7,260	6.4%	4,931	2,737	2,194	974	420	554	1,752	551	292	436
¥0 ₩	구 33.	337,744	5,446	1.0%	2,777	2,669	1.6%	521	698	152	714	106	809	1	1	1	ı
(년 진	75 子	375,613	4,868	0.9%	2,177	2,691	1.3%	62	36	26	946	191	755	969	99	604	52
원 전 문	- 38.	381,110	5,639	1.1%	2,357	3,282	1.5%	5,170	2,094	3,076	215	24	191	96	18	99	12
ti0	구 42	427,373	2,729	0.5%	296	1,762	%9.0	540	262	278	602	36	202	1,128	137	940	51
玉0	구 46	462,879	4,794	0.9%	2,090	2,704	1.0%	2,094	981	1,113	382	09	322	797	53	534	210
상 패	7 35	353,260	2,251	0.4%	821	1,430	%9.0	2,228	756	1,472	295	62	233	1,944	93	689	1,162
베	- 38·	381,529	2,442	0.5%	953	1,489	%9.0	865	413	452	217	45	175	292	88	593	85
애	전 622	622,003	2,648	0.5%	1,108	1,540	0.4%	1,488	635	853	224	32	192	391	27	197	167
(I) 回	구 470	470,751	2,919	0.5%	1,150	1,769	%9.0	2,397	852	1,545	525	99	460	944	120	799	25
A 대 문	구 34	349,163	6,821	1.3%	3,138	3,683	2.0%	250	174	9/	220	109	441	3,169	331	2,335	503
出	구 38	388,164	6,183	1.2%	2,790	3,393	1.6%	3,031	1,768	1,263	486	53	433	912	119	615	178

ן פונ		주민등록인구	ζ.	거주외국인	参驴(B)		수민등록	저	외국인근로자		THT .	국적취득자		יחי	국제결혼이주자	00平江	
IJ ├-	11	(A)	兲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였 젟	ιŀ	499,755	3,214	%9:0	1,414	1,800	%9:0	1	ı	1	268	104	464	3,039	217	1,310	1,512
강 서	ιŀ	553,660	3,883	0.7%	1,920	1,963	0.7%	1	1	1	1	1	1	ı	1	1	I
나	ιŀ	416,405	13,499	2.5%	6,843	6,656	3.2%	244	72	172	1,254	209	647	602	127	372	210
마 ഹ	Т	256,902	7,739	1.4%	4,117	3,622	3.0%	1,008	293	415	1	1	1	28	13	15	I
80 표 표	두 크	408,386	14,390	2.7%	7,509	6,881	3.5%	1,929	1,317	612	3,147	827	2,320	1,056	458	525	92
宗 (W	Т	410,481	5,683	1.1%	2,414	3,269	1.4%	4,658	2,128	2,530	699	148	515	ı	1	1	ı
心	Τ	530,020	8,310	1.5%	3,877	4,433	1.6%	-	1	1	654	258	396	1	1	1	ı
서	巾	401,736	5,294	1.0%	2,424	2,870	1.3%	-	1	L	98	25	61	372	99	306	ı
강마	宀	540,909	7,334	1.4%	3,520	3,814	1.4%	3,066	800	2,266	133	36	94	22	3	18	_
40 百	巾	605,840	5,270	1.0%	2,379	2,891	0.9%	3,094	797	2,297	386	51	338	-	1	1	ı
次 M	ιŀ	464,059	2,753	0.5%	1,085	1,668	0.6%	342	165	177	146	2	144	1,184	126	933	125
부산광역시	등	3,638,293	22,433	4.2%	12,127	10,306	%9.0	8,186	5,314	2,872	1,948	168	1,780	3,996	208	2,542	1,246
KlO	ιĻ	51,957	092	0.1%	403	357	1.5%	163	95	89	47	4	43	49	3	34	12
М	宀	139,607	226	0.2%	409	268	0.7%	129	88	40	112	3	109	438	19	536	120
ЩО	Т	109,879	1,069	0.2%	454	615	1.0%	118	75	43	122	17	105	274	30	102	142
80	十	162,961	1,335	0.2%	717	618	0.8%	196	180	16	99	3	53	334	14	236	84
부 산 진	L L	410,610	1,941	0.4%	782	1,156	0.5%	1,202	481	721	229	15	214	554	15	214	325
앤	宀	276,095	959	0.1%	314	342	0.5%	173	118	55	176	42	134	176	9	97	73
ەڭ	巾	302,257	1,643	0.3%	289	926	0.5%	197	121	9/	144	12	132	98	2	22	24
JH.	ιŀ	335,699	806	0.2%	293	615	0.3%	358	109	249	173	10	163	323	10	222	91

L) [주민등록인구	K.	거주외국인	i 총괄(B)		수민등록	ਲ	외국인근로자		ų	국적취득자	+	10	국제결혼이주자	:01 本 及	
- -	(A)	严		مخ	ਲ	(B/A)	폰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해운대구	404,599	1,745	0.3%	872	873	0.4%	458	295	163	204	23	181	163	4	152	7
사 하 구	371,909	3,060	0.6%	1,908	1,152	0.8%	1,060	871	189	249	6	240	481	11	448	22
정	264,880	1,480	0.3%	029	810	0.6%	1,195	909	689	84	6	75	123	14	73	36
강 서 구	1 53,808	2,019	0.4%	1,763	256	3.8%	1,000	849	151	15	2	13	104	6	91	4
여 제 구	217,763	208	0.1%	253	455	0.3%	193	92	101	73	2	71	128	ı	89	09
수 용 구	178,684	887	0.2%	330	497	0.5%	135	72	83	99	2	63	331	41	221	69
사상구	277,481	2,454	0.5%	1,558	968	0.9%	863	725	138	179	12	167	405	26	213	163
기 장 근	80,104	791	0.1%	651	140	1.0%	746	989	110	20	3	17	30	1	15	14
대구광역시	2,511,306	15,068	2.8%	9,133	5,935	%9.0	4,776	3,350	1,426	946	68	857	2,686	228	1,653	805
₩ Ľ-	180,081	089	0.1%	301	329	0.8%	83	46	34	46	6	37	100	8	71	21
щ Ц-	344,082	618	0.1%	182	436	0.2%	87	99	21	160	15	145	371	28	211	132
사	251,004	1,859	0.3%	1,207	652	0.7%	1,232	871	361	148	10	138	332	10	138	184
나	180,011	654	0.1%	243	411	0.4%	38	23	15	94	9	88	162	24	138	1
正	464,559	2,257	0.4%	1,272	985	0.5%	006	616	284	106	8	86	387	4	274	69
사 원 다	437,356	1,345	0.3%	673	672	0.3%	604	336	268	141	19	122	273	23	123	127
다 사 구	1 595,860	5,641	1.1%	3,735	1,906	0.9%	404	323	81	222	21	201	937	98	090	201
四级	158,353	2,064	0.4%	1,520	544	1.3%	1,428	1,066	362	29	_	28	124	2	48	71
인천광역시	2,600,495	33,960	6.3%	22,070	11,890	1.3%	17,822	13,180	4,642	1,824	227	1,597	6,647	1,752	4,245	650
K₩ L⊢	92,300	2,401	0.4%	1,344	1,057	2.6%	692	444	248	142	25	82	139	11	95	33
₩ [-	78,128	743	0.1%	411	332	1.0%	256	203	53	109	10	66	279	14	175	90

ן פונ	Thi	주민등록인구 (''05년만)		거주외국인	! 총괄(B)		수민등록	정	외국인근로자		ur.	국적취득자	,,	111	국제결혼이주자	01平八	
- -	Li	(A)	兲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폰	مخ	ਲ	자녀
مخ	ιŀ	420,403	4,074	0.8%	2,035	2,039	1.0%	652	361	291	215	49	166	464	83	266	145
외	Ϊ́	265,658	1,468	0.3%	208	200	0.6%	232	145	87	24	1	24	81	ı	09	21
叫	ιŀ	379,310	6),709	1.8%	7,847	1,862	2.6%	6,741	5,185	1,556	419	35	384	1,049	210	280	259
即	4	567,347	4,417	0.8%	2,277	2,140	0.8%	2,512	1,685	827	1	1	ı	2,139	1,164	975	1
교 양	나	335,435	2,479	0.5%	1,063	1,416	0.7%	1,104	712	392	388	32	356	366	121	874	ı
М	ᅩ	380,916	8,214	1.5%	6,077	2,137	2.2%	5,499	4,332	1,167	496	41	455	1,354	139	1,144	71
강화	ſН	62,389	275	0.1%	111	164	0.4%	28	37	21	19	_	18	86	8	61	20
8	근	15,609	180	0.0%	137	43	1.2%	92	92	ı	12	2	10	28	2	15	11
광주광역시	8	1,401,745	6,711	1.3%	3,826	2,885	0.5%	3,682	1,994	1,688	337	47	290	703	98	455	162
Щ0	Т	114,480	157	0.1%	335	422	0.7%	99	45	24	17	4	13	118	21	95	5
¥	Ϊ́	311,511	733	0.1%	264	469	0.5%	12	12	ı	102	21	81	342	21	190	131
مخ	나	214,524	625	0.1%	216	409	0.3%	250	205	345	62	2	09	120	23	84	13
JH	4	454,241	1,635	0.3%	854	781	0.4%	1,203	525	8/9	107	19	88	75	17	55	9
광산	나	306,989	2,961	0.6%	2,157	804	1.0%	1,851	1,210	641	49	1	48	48	4	37	7
대전광	광역시	1,454,638	8,167	1.5%	4,108	4,059	0.6%	2,905	1,501	1,404	258	4	514	929	24	475	156
Щ0	ᅡ	234,724	1,415	0.3%	295	820	0.6%	144	119	25	144	6	135	144	8	131	5
KЮ	ιŀ	266,635	1,098	0.5%	465	633	0.4%	256	165	91	128	13	115	128	12	111	2
돈	ιŀ	509,225	1,888	0.4%	882	1,003	0.4%	1,204	495	200	166	1	155	304	4	154	146
전 야	ιŀ	220,767	2,238	0.4%	1,318	920	1.0%	171	122	49	68	11	78	48	ı	48	ı
프	ιŀ	223,287	1,528	0.3%	845	683	0.7%	1,130	009	530	31	1	31	31	1	31	I

ון ווו	주민등록인구	7	거주외국인	! 총괄(B)		수민등록	ਲ	외국인근로자		ПF	국적취득자		111	국제결혼이주자	:01 本	
H -	(A)	F		مخ	ਲ	(B/A)	F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울산광역시	1,087,648	8,664	1.6%	5,494	3,170	0.8%	4,480	3,689	791	989	84	602	1,561	68	924	548
K₩ L⊢	235,417	988	0.2%	314	572	0.4%	193	117	9/	188	43	145	432	31	238	163
나	347,162	1,797	0.3%	984	813	0.5%	865	629	236	183	25	158	277	20	193	64
吊	184,599	2,531	0.5%	1,757	774	1.4%	1,278	1,108	170	98	5	81	263	12	164	87
부	146,117	961	0.5%	693	268	0.7%	400	362	38	06	5	85	192	9	86	88
8 사 다	174,353	2,489	0.5%	1,746	743	1.4%	1,744	1,473	271	139	9	133	397	20	231	146
경기 도	10,697,215	169,081	31.5%	107,081	62,000	1.6%	121,518	83,816	37,702	10,464	3,441	7,023	22,331	3,794	13,963	4,574
수 원 시	1,045,587	11,479	2.1%	6,002	5,477	1.1%	7,159	3,802	3,357	2,757	2,194	563	2,728	1,847	305	279
公口口	.1 983,075	10,113	1.9%	4,664	5,449	1.0%	3,267	1,377	1,890	1,158	195	963	1,411	168	898	375
N S I	1 904,077	5,346	1.0%	2,949	2,397	%9.0	4,797	2,839	1,958	86	6	68	451	6/	320	22
부전시	1 855,359	9,394	1.8%	4,786	4,608	1.1%	4,019	2,561	1,458	1,139	180	626	1,325	68	672	564
은 양 시	.1 625,350	4,076	0.8%	2,032	2,044	0.7%	3,860	2,175	1,685	422	102	320	385	36	069	200
안 산 시	.1 679,011	20,559	3.8%	13,487	7,072	3.0%	16,795	12,310	4,485	127	14	113	1,046	183	899	195
용 인 시	.1 693,660	8,566	1.6%	5,304	3,262	1.2%	5,633	3,654	1,979	400	96	304	265	06	383	119
의 정 타	402,410	2,602	0.5%	1,049	1,553	%9.0	531	339	192	366	47	352	1,019	149	837	33
고 유 유	.1 450,054	4,956	0.9%	3,114	1,842	1.1%	2,596	1,397	1,199	267	78	239	1,174	87	880	207
過過	383,976	7,965	1.5%	5,013	2,952	2.1%	4,127	2,622	1,505	294	22	239	1,338	179	362	197
유 음 기	327,828	2,654	0.5%	1,165	1,489	0.8%	1,192	674	518	173	43	130	1,017	107	584	326
	.1 387,239	11,829	2.2%	8,748	3,081	3.1%	11,484	8,694	2,790	345	54	291	1,317	118	1,046	153
표 관	.1 277,781	3,058	0.6%	1,755	1,303	1.1%	2,636	1,419	1,217	172	34	138	220	9/	346	128

	다 매		주민등록인구	7	거주외국인	총괄(B)		주민등록 이구대표	ਲ	외국인근로자		THT	국적취득자	r r	ın .	국제결혼이주자	이주자	
	. 1		(A)	兲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3 0	ਲ	자녀
响	₹0	7	296,530	14,970	2.8%	11,236	3,734	2.0%	11,907	9,351	2,556	103	31	72	606	73	791	45
白	Kŀ	7	261,770	6,424	1.2%	4,481	1,943	2.5%	5,498	4,247	1,251	352	46	306	276	91	781	105
<u></u>	赵	7	192,271	1,952	0.4%	1,207	745	1.0%	1,753	1,173	280	189	2	187	595	17	258	20
₽	핍	N	192,548	1,054	0.2%	443	611	0.5%	940	382	258	150	22	128	229	21	124	84
짇	泔	7	207,229	8,181	1.5%	6,569	1,612	3.9%	6,556	5,390	1,166	267	30	237	412	30	237	145
버	회	Ν	155,242	7,199	1.3%	5,499	1,700	4.6%	6,286	5,020	1,266	142	21	121	501	19	353	87
넎0	K⊦	7	214,498	6,539	1.2%	4,834	1,705	3.0%	6,290	4,642	1,648	339	99	273	249	12	221	16
히	돈0	Ν	157,130	3,109	%9:0	1,982	1,127	2.0%	2,290	1,772	518	279	36	243	861	22	029	269
心	مخ	7	132,850	1,605	0.3%	819	286	1.2%	1,300	703	265	118	5	113	216	2	113	101
<u></u>	헉0	7	145,952	1,151	0.2%	574	225	0.8%	409	234	175	29	11	99	280	20	204	26
ö 0	Kŀ	7	160,589	7,216	1.3%	5,585	1,631	4.5%	6,082	4,700	1,382	199	30	169	524	29	458	7
어	勺	7	129,843	1,772	0.3%	1,045	727	1.4%	1,117	818	536	132	42	90	296	45	239	12
ਲ	Kŀ	巾	104,260	1,117	0.2%	889	429	1.1%	854	511	343	64	7	22	650	14	250	386
ö 0	型0	巾	85,533	753	0.1%	377	376	0.9%	215	146	69	28	13	45	219	8	155	56
버0	마 최	7	82,623	2,012	0.4%	930	1,082	2.4%	1,519	278	941	141	15	126	83	6	74	ı
ᅧ	凼	7	926'09	305	0.1%	136	166	0.5%	170	101	69	36	5	31	84	1	92	8
₹	酉0	巾	54,861	536	0.1%	240	296	1.0%	116	82	31	48	∞	40	244	53	159	56
ਸੂ	赵	Η̈́	47,123	265	0.1%	368	224	1.3%	120	100	20	53	1	59	49	က	23	23
70	애	버	1,513,110	8,951	1.7%	4,353	4,598	%9.0	1,940	1,418	522	1,073	72	1,001	3,596	36	1,932	1,572
ĸН	赵	7	254,999	1,492	0.3%	808	683	%9:0	26	25	_	40	1	40	284	1	126	158

	U 		주민등록인구		거주외국인	! 총괄(B)		수민등록	ਲ	외국인근로자	-	TH.	국적취득자	<u></u>	וח	국제결혼이주자	이주자	
	- 년		(A)	严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砈	K⊦	7	288,454	2,087	0.4%	1,073	1,014	0.7%	527	414	113	363	29	334	629	35	335	209
5	NIO	7	224,391	1,195	0.5%	622	573	0.5%	104	85	19	72	6	හ	260	22	177	61
Щ0	희	7	99,230	329	0.1%	132	197	0.3%	142	85	25	41	8	33	144	1	29	77
击	凯	N	52,463	179	%0:0	49	130	0.3%	135	39	96	18		17	28	1	24	34
巛	ıК	N	87,124	451	0.1%	226	225	0.5%	80	25	23	84	5	6/	51	ı	43	8
ネ□	赵	Ν	73,134	300	0.1%	173	127	0.4%	99	9	20	21	2	19	4	-	3	1
1010	赵	ſН	70,811	738	0.1%	339	399	1.0%	175	152	23	103	2	101	494	16	274	204
<u>104</u> 0	돈0	H	43,678	326	0.1%	169	157	0.7%	104	87	17	28	1	28	300	ı	129	171
ਲ0	丽	ſН	41,538	163	%0:0	75	88	0.4%	80	73	7	1	1	1	137	2	81	54
酉0	ı ċ 0	Ĥ	45,033	182	%0.0	71	111	0.4%	19	11	8	74	7	29	596	3	152	141
돈0	쇠	ľН	44,203	316	0.1%	157	159	0.7%	138	112	26	28	ı	28	135	1	75	59
젟	애	ſН	48,933	247	%0:0	81	166	0.5%	69	09	6	39	_	88	248	5	122	121
闷	虳	ſН	23,732	86	%0:0	37	55	0.4%	19	12	7	59	3	26	99	ı	99	1
ö 0	巾	Η	21,480	137	0.0%	32	102	%9.0	24	21	3	13	1	13	177	ı	73	104
힑	西	Η	32,811	147	0.0%	53	118	0.4%	38	34	4	27	2	25	61	_	28	2
디	₹0	Η	31,964	322	0.1%	135	187	1.0%	104	89	36	39	_	88	186	9	98	94
ö 0	ö 0	ſН	29,132	251	0.0%	141	110	0.9%	100	77	23	24	2	22	126	_	21	74
·КЮ	坯0 IIL	버	1,488,803	13,889	2.6%	8,009	5,880	0.9%	2,592	4,323	1,269	1,209	152	1,057	3,277	66	1,696	1,482
长0	Kŀ	=	630,939	3,338	%9:0	1,607	1,731	0.5%	532	316	216	329	26	303	352	22	156	174
·КЮ	K⊦	⋜	205,907	1,382	0.3%	289	695	0.7%	725	480	245	249	55	194	452	15	239	198

	U.		주민등록인구 (*05년말)		거주외국인	! 총괄(B)		주민등록 이그대비	ਲ	외국인근로자		ų.	국적취득자		1H	국제결혼이주자	이주자	
	- -		(A)	严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图	赵	7	138,201	748	0.1%	391	357	0.5%	110	25	53	80	16	49	324	30	166	128
赵	애	ſН	119,784	1,726	0.3%	1,024	702	1.4%	089	253	127	120	2	118	260	13	282	265
퍼	CIO	巾	37,114	427	0.1%	281	146	1.2%	235	226	6	35	ı	35	189	1	96	96
애	쬐	ſН	55,610	448	0.1%	183	265	0.8%	202	129	73	96	21	74	248	4	135	109
ਲ0	버0	巾	51,800	202	0.1%	263	244	1.0%	242	197	45	55	2	20	249	5	123	121
KI0	酉0	H	30,607	526	0.0%	86	158	0.8%	120	69	19	20	7	13	49	1	25	23
KJ	凼	ſН	60,155	2,089	0.4%	1,564	525	3.5%	1,413	1,145	268	51	4	47	156	2	73	81
ㅁ	勺	巾	38,595	416	0.1%	203	213	1.1%	139	121	18	99	14	42	221	_	116	104
0 0	天0	巾	85,969	2,283	0.4%	1,603	089	2.7%	1,157	1,020	137	26	2	36	381	9	211	164
亡	ö 0	Ĥ	34,122	569	0.1%	105	164	0.8%	37	20	17	25	1	25	96	1	9/	20
·КЮ	多可	버	1,962,646	20,641	3.8%	13,285	7,356	1.1%	10,020	7,925	2,095	1,376	68	1,287	3,826	72	2,093	1,661
凼	히	7	512,482	6,864	1.3%	4,501	2,363	1.3%	3,981	3,015	996	249	47	202	551	26	310	215
FH0	K⊦	7	129,489	1,409	0.3%	718	169	1.1%	1,074	200	374	73	2	71	200	2	149	49
퍼	700万	7	108,056	226	0.1%	319	260	0.5%	265	206	26	74	8	99	214	5	137	72
ö	勺	7	204,431	3,837	0.7%	2,783	1,054	1.9%	893	784	109	ı	1	ı	79	10	69	ı
₹	勺	=	150,294	1,109	0.5%	701	408	0.7%	517	472	45	84	8	9/	272	_	152	119
TH	勺	=	134,217	922	0.5%	475	447	0.7%	391	286	105	190	14	176	329	8	228	123
兲	咁0	=	34,370	93	0.0%	48	45	0.3%	12	6	က	5	ı	2	33	6	18	9
ΠO	勺	Η	58,378	726	0.1%	417	306	1.2%	293	254	33	71	ı	71	230	ı	130	160
ਸ਼ੁ	\vdash	ſН	84,308	289	0.1%	418	171	0.7%	445	389	26	74	3	71	144	3	98	55

	ון ת		주민등록인구	,	거주외국인	参聖(B)		수민등록	허	외국인근로지		ИF	국적취득자		In	국제결혼이주자	100平八	
	- ⊢		(A)	兲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	ਲ	ſН	81,430	496	0.1%	224	272	%9:0	169	126	43	87	1	87	344	ı	184	160
¥	赵	цJ	64,322	386	0.1%	250	136	%9:0	36	33	3	27	_	26	109	-	53	56
平0	ö 0	ſН	34,921	500	0.0%	\$	125	%9:0	9/	46	30	28	3	55	165	3	84	78
1010	天0	ſН	90,931	089	0.1%	374	256	0.7%	254	208	46	45	1	45	182	-	100	82
퓽	勺	Ĥ	90,740	721	0.1%	449	272	0.8%	466	435	31	37	1	37	109	2	81	26
出	임	H	63,794	262	0.1%	176	116	0.5%	272	165	107	40	1	40	62	-	24	38
立0	뫼	цJ	120,483	1,779	0.3%	1,348	431	1.5%	876	797	62	262	3	259	713	3	288	422
죄	宁	버	1,885,335	12,282	2.3%	5,635	6,647	0.7%	3,585	2,493	1,092	1,154	169	986	4,249	156	2,686	1,407
되	Kŀ	7	621,749	2,206	0.4%	874	1,332	0.4%	484	324	160	74	4	70	719	52	653	14
머	勺	7	263,120	1,736	0.3%	873	863	0.7%	572	432	140	106	4	102	103	-	66	4
ਰਾ	勺	7	318,506	2,364	0.4%	1,124	1,240	0.7%	1,175	9/9	499	113	16	26	591	45	469	77
₹0	0 1	7	129,050	1,455	0.3%	761	694	1.1%	161	127	34	96	1	96	323	-	195	128
立	애	7	93,670	551	0.1%	190	361	0.6%	71	09	11	81	_	8	386	2	251	133
ᄗ	펌	7	102,720	610	0.1%	380	230	0.6%	243	221	22	84	7	77	214	10	138	99
히	Kŀ	ſН	83,651	1,009	0.2%	544	465	1.2%	329	314	45	182	74	108	323	3	171	149
짇	히	ſН	29,021	312	0.1%	109	203	1.1%	186	75	111	41	2	39	66	2	39	58
마	Kŀ	ľН	25,876	354	0.1%	207	147	1.4%	103	99	37	6	31	99	244	21	100	123
≓ 0	⟨⊦	ιΉ	24,755	447	0.1%	189	258	1.8%	51	46	5	32	1	32	368	4	118	246
ᅙ	和	ľЭ	32,511	202	0.0%	81	121	%9:0	20	16	4	30	1	30	183	1	103	80
出	☆0	ſН	32,012	342	0.1%	117	225	1.1%	9	5	_	99	14	25	336	_	134	201

''	ון ענ	주민등록인구		거주외국인	! 参驴(B)		수민등록	ਰ	외국인근로지	_	THF	국적취득자	-	וח	국제결합	혼이주자	
	H	(A)	兲		مخ	ਲ	(B/A)	ᆓ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F	☆0	표 63,676	328	0.1%	115	213	0.5%	110	36	18	44	ı	4	206	ı	107	66
파	히	군 65,018	396	0.1%	71	295	%9:0	44	39	5	108	16	36	154	16	109	29
전 다	立	工 1,967,205	11,980	2.2%	2,390	6,590	%9:0	3,067	2,264	803	1,380	62	1,318	6,869	137	3,594	3,138
머	벎	AI 242,988	1,079	0.2%	329	720	0.4%	970	258	262	124	2	122	538	19	453	99
ਲ	⟨⊦	AI 301,389	1,382	0.3%	854	528	0.5%	265	546	46	85	1	88	367	13	274	80
化	칟	AI 270,934	1,396	0.3%	651	745	0.5%	208	159	46	103	2	101	323	1	138	184
立	Kŀ	AI 97,980	699	0.1%	240	429	0.7%	191	129	62	101	8	93	604	12	268	324
白0	6 6	AI 138,098	743	0.1%	361	382	0.5%	128	102	26	94	10	84	367	16	198	153
රා	6 0	군 20,364	333	0.1%	149	184	0.7%	168	141	27	52	16	36	336	30	154	152
HL	돈0	군 34,157	422	0.1%	169	253	1.2%	47	31	16	29	2	22	318	-	144	174
₽	爫	군 29,577	181	0.0%	36	145	0.6%	2	2	ı	28	_	27	201	ı	66	102
디	10 0	표 83,830	347	0.1%	94	253	0.4%	11	8	3	61	1	09	336	1	176	159
퍼	돈0	군 53,145	167	0.0%	37	130	0.3%	54	31	23	7	1	7	113	4	26	12
闷	化	군 73,673	621	0.1%	286	335	0.8%	108	98	22	119	11	108	503	12	214	277
≓ 0	10 0	군 45,542	372	0.1%	42	330	0.8%	41	40	_	20	2	48	331	2	143	186
5	짇	군 42,696	161	0.0%	49	112	0.4%	25	46	6	31	-	31	148	3	72	73
壱	ەخ	군 86,238	809	0.1%	166	442	0.7%	30	25	5	68	1	68	494	_	240	253
ප0	包	군 62,004	1,145	0.5%	754	391	1.8%	96	06	9	83	ı	88	346	4	141	201
마	히	군 61,915	503	0.1%	230	273	0.8%	78	70	∞	16	ı	16	340	14	199	127
砬口	酉0	군 40,189	517	0.1%	241	276	1.3%	96	81	15	99	2	22	326	~	150	175

	ון ונ		주민등록인구 /'05년만〉		거주외국인	i 参迎(B)		수민등록	ਲ	외국인근로지	_	THT .	국적취득자		ın	국제결혼	혼이주자	
	- F		(A)	严		مخ	ਲ	(B/A)	严	مخ	ਲ	严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ਲ0	中0	巾	61,500	204	%0:0	<i>L</i> 9	137	0.3%	116	09	29	42	4	88	126	_	82	43
☆0	₹0	巾	49,165	621	0.1%	429	192	1.3%	356	314	42	33	_	32	217	1	112	104
성	버	巾	58,841	206	0.0%	88	118	0.4%	146	34	112	41	1	41	164	2	82	80
짇	버	巾	36,529	233	0.0%	74	159	0.6%	18	6	6	49	1	49	214	ı	87	127
긱	히	巾	46,451	70	0.0%	14	99	0.2%	9	2	4	47	1	47	157	1	71	86
大0 大0	小师	버	2,688,491	24,568	4.6%	14,614	9,954	0.9%	10,456	7,569	2,887	1,061	106	955	4,407	118	2,716	1,573
泔	向0	N	507,052	2,361	0.4%	1,371	066	0.5%	009	531	69	96	6	98	591	16	356	219
전0	Kŀ	7	275,087	2,327	0.4%	1,690	637	0.8%	1,715	1,496	219	84	17	29	420	10	298	112
짇	虳	7	141,632	1,114	0.5%	634	480	0.8%	629	467	212	119	9	113	346	2	173	171
히	Щ0	=	171,387	925	0.5%	430	495	0.5%	33	28	5	91	5	98	301	_	151	149
₽	=	₹	374,614	4,285	0.8%	2,468	1,817	1.1%	2,851	1,749	1,102	ı	1	1	329	ı	180	149
ප0	Kŀ	7	119,098	90/	0.1%	336	370	0.6%	54	42	12	22	2	20	127	4	94	29
ප0	凼	7	107,337	1,301	0.5%	903	398	1.2%	925	747	178	92	7	82	184	4	127	53
	Kŀ	7	110,444	479	0.1%	218	261	0.4%	178	132	46	48	1	47	251	1	147	103
마	전0	7	78,058	179	0.0%	41	138	0.5%	42	28	14	99	1	26	132	ı	88	43
전0	勺	7	227,766	4,421	0.8%	2,656	1,765	1.9%	490	348	142	102	5	26	403	22	329	52
ſН	죵	ſН	27,709	301	0.1%	193	108	1.1%	210	116	96	ı	1	1	1	ı	1	ı
<u>10</u>	₹0	Η	64,457	409	0.1%	196	213	0.6%	199	157	42	28	2	26	182	_	112	69
팑0	40	Η	29,298	117	0.0%	33	84	0.4%	25	19	9	26	9	20	127	1	25	72
ਲ0	ö 0	ľН	20,025	99	0.0%	=======================================	45	0.3%		_	ı	18	5	13	61	36	_	24

	주민등록인구		거주외국인	参驴(B)		子 記号 記述	허	외국인근로자		Ĥ.	국적취득자	_	ıп	국제결혼이주자	500平자	
	(A)	〒		مخ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 G
	군 45,003	118	%0.0	42	9/	0.3%	51	37	14	39	4	35	77	_	63	13
	군 46,748	229	%0.0	154	75	0.5%	66	75	24	o	1	6	64	ı	49	ı
	군 34,271	975	0.2%	779	196	2.8%	208	423	88	73	24	49	139	8	125	9
	군 46,960	797	0.1%	469	298	1.6%	354	280	74	23	2	21	104	9	74	24
	근 107,750	2,719	0.5%	1,628	1,091	2.5%	1,229	718	511	15	2	13	88	_	45	42
	- 50,951	326	0.1%	133	193	%9.0	78	64	14	25	1	24	247	-	123	124
	36,599	180	%0:0	29	113	0.5%	24	24	1	21	1	21	201	3	06	108
.,_	도 56,707	598	0.1%	162	107	0.5%	111	87	24	71	8	83	33	2	20	11
.,_	공 6,538	4	0.001%	1	4	0.0%	1	1	1	4	1	4	1	ı	ı	1
_	三 3,160,431	28,621	2.3%	19,636	8,985	%6:0	15,968	13,521	2,447	1,613	179	1,434	5,111	233	3,640	1,238
- 1	AI 504,520	4,584	0.9%	3,086	1,498	0.9%	2,624	2,126	498	225	13	212	884	99	611	217
_	AI 425,018	2,146	0.4%	1,181	365	0.5%	230	195	35	141	7	134	429	29	368	62
- 1	AI 336,234	1,572	0.3%	964	809	0.5%	428	358	70	100	_	66	224	3	132	88
	Al 156,992	1,668	0.3%	1,342	326	1.1%	753	639	114	162	69	93	130	14	94	22
-	AI 132,795	992	0.1%	498	267	%9.0	476	438	38	86	5	93	371	9	190	175
· •	AI 111,293	662	0.1%	468	194	0.6%	304	290	14	62	7	55	123	9	117	1
-	AI 443,017	6,350	1.2%	4,993	1,357	1.4%	3,751	3,106	645	313	20	293	835	61	774	'
•	AI 113,636	625	0.1%	276	349	%9.0	159	145	14	81	2	79	368	2	187	179
-	Al 195,609	4,023	0.7%	3,128	895	2.1%	2,812	2,714	86	41	4	37	262	24	238	'
` `	AI 222,299	2,621	0.5%	1,551	1,070	1.2%	2,513	1,905	809	152	12	140	88	6	70	6

주민등록인구 /'06년라〉		거주외국인	총괄(B)		수민등록	ਲ	외국인근로자		TH.	국적취득자	立	- (1)	국제결환	국제결혼이주자	
(A)	兲		מב	ਲ	(B/A)	兲	مخ	ਲ	兲	مخ	ਲ	兲	مخ	ਲ	자녀
31,099 270	270	0.1%	205	99	%6:0	214	198	16	1	ı	ı	55	9	49	ı
61,376 1,090	1,090	0.2%	884	206	1.8%	762	703	29	51	_	20	185	7	122	26
64,672 526	979	0.1%	321	205	0.8%	327	257	02	20	_	19	156	4	121	31
56,189 347	347	0.1%	203	144	%9:0	241	190	51	32	1	32	28	2	99	1
51,825 271	271	0.1%	147	124	0.5%	113	108	2	19	ı	19	162	3	89	70
53,131 75	75	%0.0	53	22	0.1%	40	18	22	35	35	ı	143	1	81	62
36,294		%0.0	29	117	0.5%	46	40	9	15	1	15	155		26	22
41,535 206		%0.0	99	150	0.5%	15	15	1	12	-	12	184	_	104	80
64,735 247		%0.0	93	154	0.4%	33	25	8	36	2	34	151	_	74	77
58,162 389		0.1%	120	569	0.7%	127	51	9/	18	1	18	118	1	99	52
557,569 2,645	2,645	0.5%	1,391	1,254	0.5%	1,292	747	545	98	10	9/	727	28	539	160
303,499 1,117	1,117	0.2%	519	298	0.4%	713	282	431	17	1	17	185	3	170	12
83,027 497	497	0.1%	236	261	%9.0	78	64	14	23	6	14	206	19	138	49
97,202 627	627	0.1%	392	235	%9.0	364	272	35	34	_	88	222	2	155	65
73,841 404	404	0.1%	244	160	0.5%	137	129	8	12	-	12	114	4	9/	34

2007년 2월

| 편 집 | 주민제도팀장 김 경 희 서 기 관 **안 승 대** 담 당 관 임 성 범

| **발행처**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TEL: (02)2100-3995

| **인쇄처** | 아 람 인 쇄

TEL: (02)2273-2497